

현안분석 2008-

비교법제 연구 08-03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 동북아시아 FTA의 일반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분석과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

김동훈 · 김봉철 ·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 동북아시아 FTA의 일반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분석과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

The legal issues on Northeast Asian FTA
safeguard rules for the CJK FTA

연구자 : 김동훈(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Kim, Dong-Hoon

김봉철(영국 킹스칼리지 연구원)

Kim, Bong-Chul

박찬호(부연구위원)

Park, Chan-Ho

2008. 7.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개념이 국제경제법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적 틀로 자리잡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확산되었던 FTA 체결현상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FTA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WTO 규범과도 연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FTA는 WTO 규범이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영향력이 큰 FTA가 국제경제규범으로서 주변의 FTA 또는 WTO 규범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FTA와 WTO 규범은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중첩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FTA가 성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당사국 사이의 무역피해가능성을 용이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FTA 체결국들은 이점을 FTA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면서 해결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를 낳는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제도인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과 심각한 피해가 연결되는 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세이프가드 적용문제에 관한 FTA와 WTO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과연 세이프가드 조치가 GATT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회원국 사이에 상업적 규제의 전반적인 제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WTO 체계 내에서 FTA 규범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이 어떻게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FTA에 관하여 현재까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수차례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다. FTA 세이프가드에 관한 분쟁 사례에서 WTO 패널들이 제시한 결론들을 종합하면, FTA 세이프가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GATT 제24조에 나타난 ‘상업적

규제의 전반적인 제거'의 일부라고 인정된다. 만약 어느 FTA가 GATT 제24조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FTA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 제24조를 근거로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그 경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가치로 인하여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지역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최근 국제경제정책은 주로 FTA 체결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들 사이의 FTA 체결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미 이들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가 동북아시아 지역과 각국에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각국 사이에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장애물이 놓여있으나,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경제규범으로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FTA가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해서 이미 WTO 규범의 틀을 넘어어서고 있다. 일부 FTA는 당사국 사이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도 하고, 보호주의 입장에서 WTO 규범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그 가능성을 줄이기도 한다.

FTA의 세이프가드 규범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또는 지역간 조치에 관한 내용과 다자간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FTA가 기본적으로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WTO 규범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것은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있어서 FTA 체결국들이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간 또는 지역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간 또는 지역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FTA 체계 내에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규범을 구성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한중일 FTA에서도 보다 자세한 규정을 통해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자간 세이프가드는 WTO 규범을 수용하는 규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FTA

가 지역간 세이프가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한중일 FTA에서 이 방법을 규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서 소규모 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세이프가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세이프가드 적용요건에 관하여, 한중일 FTA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FTA들이 이러한 입장에 있으며, 한중일 3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보다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중일 FTA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이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각국이 분쟁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수입과 피해 사이의 보다 실질적인 연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의 요건은,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FTA의 혜택을 받은 수입증가가 실질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적용형태는, 원칙적으로 FTA 양허표에 따른 관세축소를 정지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같은 특정 한계 내에서 관세율의 인상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한계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1년 혹은 2년 정도의 한계기간과, 이와 같은 정도의 연장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협의 및 보상절차를 규정할 것이다. 많은 FTA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려는 수입국이 보상을 하거나 조치의 영향을 받게되는 수출국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WTO 규범은 세이프가드 조치 후 3년 동안 수출국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각 FTA 역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당사국이 구제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협약의 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도 한중일 FTA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서 다른 분야의 무역자유화로 수출국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국이 보복조치로서 FTA 특혜를 정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에 관한 특별 세이프가드 역시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와 달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에서도 별도의 농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FTA에서도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흔하지 않다. 세이프가드를 위한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 역시 FTA에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다. 한중일 FTA에서도 이러한 세이프가드만을 위한 독립적인 분쟁해결장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FTA 정책과 체결된 FTA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 및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왔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항도 관련 규범의 정비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낳을 것이다. 한중일 FTA와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국내규범의 정비와 대응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구된다.

※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농산품, 세이프가드, WTO, 분쟁해결

Abstract

The concept of FTA, the Free Trade Agreement, recently became a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surge in FTAs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arly 1990s until now. These FTA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are also connected with WTO agreements. Some of them recently control new areas such as labour and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the WTO agreements cannot regulate effectively. What is more, several FTAs have a direct effect on WTO agreements as international economic law. Sometimes these situations cause serious trade conflicts in the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matters. Therefore, FTAs and WTO agreements make up the dual resource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FTAs are successful in part because they provide the parties of the agreement with the ability to limit potentially injurious trade between them. They do th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afeguard regulations. The safeguard regulation is designed to limit surges of imported goods, which causes or threatens serious injury to domestic industries. Therefore, the imposition of a safeguards measure requires evidence of the linkage between the imports and the serious injury.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FTAs in terms of safeguards applications, one of the intriguing issues would be whether safeguard measures are part of the general elimination of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between partners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s XXIV of GATT. In other words, the issue is whether safeguard measures may or may not be imposed upon partners of FTAs under the WTO.

This is the main point of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FTAs under the WTO regime.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of the WTO panels on several cases of trade dispute regarding the safeguards of FTAs, safeguards may be part of the general elimination of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between partners of FTAs under Article XXIV of GATT, provided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other words, such safeguards may not be imposed upon FTA partners under Article XXIV of GATT if the FTA is in compliance with Article XXIV.

Northeast Asia has been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of the region's dynamic economic power and strategic value.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of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FTAs in recent years. The three countries of the region are now considering the CJK(China-Japan-Korea) FTA. They have agreed that the CJK FTA will be beneficial to the region and to each country, a conclusion based on considerable joint research. Although there may be several obstacles, the prospects of this FTA are bright. Therefore, legal research is needed until the CJK FTA can become a par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With respect to safeguard measures, many FTAs have gone beyond the WTO framework, either by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these measures, or by strengthening WTO rules to minimise the opportunity of using them in a protectionist manner.

Safeguard regulations in FTAs are usually divided in rul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or regional safeguard measures and those that regulate the application of global safeguard actions. Basically, many FTAs simply confirm the global safeguard rules provided in the WTO rules and

extensively regulate their bilateral or regional safeguard rules. This is because the parties of FTAs must consider the relationships with the third countries on global safeguards. However, they may feel that it is easier to produce articles on bilateral or regional safeguards in their FTAs.

Bilateral safeguards can be regulated in more detailed articles of the CJK FTA. Global safeguard measures may also be allowed in the FTA, just reaffirming the WTO rules. Although many FTA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do not regulate this,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for the CJK FTA to provide regional safeguard measures in their free trade area.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imagine producing the special treatment rule for small/developing economy countries.

Regarding the issue of requirements for safeguards, the CJK FTA may allow that it does not require 'unforeseen development' to take the action. Many FTA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re in this position and the three countries will prefer protecting their domestic industry. In contrast, the CJK FTA must require that imports should be a substantial cause of injury for the safeguard action. It is because the Parties will require a more substantial concept linking imports and injury to avoid disputes among the Parties. Conclusively, the standard of requirement for safeguard measures in the CJK FTA can be such that the imports substantially cause serious injury (or disturbances) or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The forms of safeguard measures in the CJK FTA may include suspension of the further reduction of customs duty under the FTA schedule. Furthermore, it may allow for the rate of customs duty to be

increased with specific limitations such as the WTO MFN principle. The dur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in the CJK FTA must be as long as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injury with specific period limitations. One year or two years with the same possible period of extension can be considered to be those specific period limitations.

The CJK FTA will provide the consultation and the compensation processes. Many FTAs have rules on the compensation issues. Most FTAs allow the exporting party to apply compensation or practise specific retaliation immediately after the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by the importing Party. That is not the case with the WTO rules which allow the importing party to be free from any action by the exporting country for three year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FTAs also normally regulate their own consultation procedures. They provide their Parties with opportunities to find other ways to remedy the situation.

Regarding the consultation and compensation procedure, the CJK FTA shall permit various methods. Basically, the importing country proposing to apply a safeguard measure must provide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other areas with the agree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as a first step. If they cannot reach agreement,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JK FTA must have the right to suspend other concessions by retaliation. Finally, the CJK FTA may also consider providing articles preventing the Party from exercising any of these two steps for a specific period.

On the other h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not a common part of safeguard regulations of many FTAs because FTAs usually contempl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eparately.

There have been already some partial amendments of Korean national laws regarding the safeguard measures in the FTA policies. Moreover,

several new act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issues. However, the CJK FTA will produce new kinds of legal problems. A long term view is still needed for both the Korean FTA policy and legal infrastructure on safeguard measures which is related to the CJK FTA.

※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 Farm Products, Safe Guard, WTO, Dispute Settlemen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	17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19
제 2 장 FTA와 세이프가드	23
제 1 절 FTA	23
1. FTA 일반론	23
2. FTA의 규범적 역할	27
3.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과 규제	32
제 2 절 세이프가드	41
1. 세이프가드와 WTO 규정	41
2.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체계	43
3. FTA에서 세이프가드의 중요성	45
제 3 절 FTA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분쟁	47
1. FTA에 관한 분쟁의 주요 내용	47
2.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사건	48
3. 기타 FTA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WTO의 판정	50
제 4 절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53
1. 세이프가드의 종류	54
2.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	56
3.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	57
4. 피해의 원인	58

5. 피해의 기준	59
6.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	61
7.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	62
8. 당사국간 협의의 절차	62
9. 보상의 형태	63
제 3 장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과 비교	65
제 1 절 동북아시아 3국의 FTA	65
1. 한국의 FTA	65
2. 중국의 FTA	66
3. 일본의 FTA	68
제 2 절 한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69
1. 한-칠레 FTA	69
2. 한-싱가포르 FTA	69
3. 한-EFTA FTA	70
4. 한-ASEAN 상품무역 FTA	71
5. 한-미 FTA	72
제 3 절 중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73
1. APTA	73
2. 중-ASEAN FTA	75
3. 중-홍콩 및 마카오 CEPA	76
4. 중-칠레 FTA	77
5. 중-파키스탄 FTA	78
제 4 절 일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79
1. 일-싱가포르 EPA	79
2. 일-멕시코 EPA	81
3. 일-말레이시아 EPA	82
4. 일-칠레 EPA	83

제 5 절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논점별 비교 분석 ...	85
1. 세이프가드의 종류	85
2.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	86
3.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	87
4. 피해의 원인	88
5. 피해의 기준	89
6.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	90
7.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	91
8. 당사국간 협의의 절차	94
9. 보상의 형태	95
제 4 장 FTA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97
제 1 절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97
1.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WTO 규정	97
2. FTA와 농산물의 민감성	98
3. FTA와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100
제 2 절 동북아시아 3국의 농업관계와 세이프가드 적용사례 비교 ...	101
1. 동북아시아 3국의 농업구조와 민감성	101
2. 동북아시아 3국 사이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사례 - 마늘분쟁과 버섯분쟁	103
제 3 절 동북아시아 FTA의 농산물 보호노력	105
1. 동북아시아 FTA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105
2.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이외의 국내 농업 보호노력	107
제 5 장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과 국내법의 대응방향	109
제 1 절 한중일 FTA의 체결가능성	109

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109
2. 전망과 과제	111
3. 무역규범의 조화	112
제 2 절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	114
1. 일반적인 규정의 구성	114
2. 논점별 규정의 방향	115
제 3 절 한중일 FTA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가능성	120
1. 한중일 농업분야의 과제	120
2. 농산물에 대한 특별취급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가능성	121
제 4 절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하는 국내 세이프가드 규정의 개선방향	122
1.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국내법적 과제	122
2. FTA 관련 세이프가드 국내법 규정	124
3.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의 개선방향	127
제 6 장 결론 및 요약	131
참 고 문 헌	133
부 록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147
2. 동북아시아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170
3. WTO 농업협정 제5조	253
4.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	258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배경

WTO 출범 이후 다자주의적 국제경제규범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환경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는 이른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WTO 규범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을 공유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FTA는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말한다. FTA를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시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역내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에 이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역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간 연계현상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규범형태는 WTO와 견줄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는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규제하려고 노력하며, 이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축을 이루고, 많은 수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각국의 무역이 확대되고 관세가 축소되는 현재의 무역환경 속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WTO 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자주 이용

되는 것이 바로 세이프가드(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이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가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국가가 직접 해당 상품의 수입과 산업보호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효과적인 자국산업 보호수단이다.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세이프가드는 농산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농산물 세이프가드라도 한다.

FTA 역시 이러한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해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FTA 세이프가드 규정들은 WTO 규범과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FTA에 나타난 세이프가드 규정들 사이에도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FTA 체결 당사국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제3국과의 관계 또는 WTO 규범과 각 FTA 규범의 같등으로 나타날 소지가 충분하다. FTA 체결 급증에 따라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간 FTA에 관한 논의가 주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조망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FTA가 국가간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체계의 형식을 통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하여 법리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 사이에 적용되는 고유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각각의 FTA에 명시된 세이프가드의 공통점 및 특수성들을 도출하여 WTO 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이 농산물에 민감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는

데, 이것이 WTO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범 또는 다른 FTA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범 등과 차이를 보여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기반이 된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국의 FTA 비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 지역 각국의 FTA에 나타난 세이프가드 규정을 비교 및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미리 예측하며 국내법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는, FTA라는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문제들 중에서, 무역에 관한 효과적인 자국산업 보호수단인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중일 FTA의 추진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연구의 일부로서, 세이프가드 제도가 FTA에 어떻게 자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FTA 및 동북아시아 지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본 연구는 FTA와 세이프가드라는 국제경제규범의 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FTA의 법적 의미와 규범적 효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제도 전반에 관한 WTO 규범 차원

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본 연구의 두 가지 기본적 소재에 대한 연구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이후의 연구에 관한 기반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FTA에 나타나고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WTO 세이프가드 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논점을 도출한다. 또한 FTA 세이프가드 규범이 각 FTA 전체와 어떠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작동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이어지는 각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 세이프가드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국내에서 규범화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한편으로는, 이전에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FTA들을 법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의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각 논점별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국내법적 대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는 WTO 농업협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동시에 몇몇 FTA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비교 및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계 주요 FTA를 선별하였다. 연구내용은 주로 해당 협정문의 내용들을 논점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체결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FTA를 다시 논점별로 분석하여 첫 단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와는 별도로,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내법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내 세이프가드 규범 및 FTA 세이프가드에 관한 특별규정들의 내용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으로는,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세계 주요 FTA 세이프가드 규정들 중에서 일부와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들을 발췌하여 포함하였다.

제 2 장 FTA와 세이프가드

제 1 절 FTA

1. FTA 일반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FTA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¹⁾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을 위한 법적 수단이다.²⁾ FTA는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형성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FTA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 개의 FTA를 체결하였고,³⁾ 미국의 입장 변화는 그 동안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는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오히려 FTA가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⁴⁾

1)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배경과 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ichard Pomfret, *The Economics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을 참고할 것.

2) 김봉철,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73면.

3)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관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ATT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80년대 미국의 FTA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지역주의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추구, 쌍무적인 무역관계 개선과 균형 있는 무역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NAFTA가 발효되어 북미지역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49-50면].

4) FTA의 체결수와 세계적 분포, 발전방향 등에 관한 WTO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일반적인 FTA의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FTA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⁵⁾ FTA의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이 다른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⁶⁾ 또한 WTO 출범 이후에 나타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⁸⁾

FTA의 중심요소는 상품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관세제거 계획,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이

[Roberto V. Fiorentino, Luis Verdeja and Christelle Toquebueuf,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Discussion paper, WTO, 2007]를 참고할 것.

5) NAFTA는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원산지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환경, 노동, 수량제한금지, 관세평가와 세관수속, 기준과 인증, 위생식물검역,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인적이동 등을 포괄하여 그 대상 범위가 넓다.

6)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25면.

7)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훈·김봉철·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1) - 브라질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40~41면]을 참고할 것.

8) 즉,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나 민감한 사안 등이 FTA의 규율범위와 대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 사이에는 농산물분야에 대한 FTA 규율범위와 특별규정의 명시 여부가 협상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범위를 포함하는 FTA를 좁은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FTA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⁹⁾를 첨가하는 FTA도 있다. 이와 같이 FTA의 중심요소에 더하여 부수적인 협정이 포함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FTA라고 하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FTA가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⁰⁾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FTA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FTA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¹¹⁾ 속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등장하게 되었다. FTA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²⁾

<표 1> FTA의 유형¹³⁾

유형	예	효과
국가간 FTA (양자간·복수국가간)	한-칠레 FTA(양자간) NAFTA(복수국가간)	- 기존 시장의 확대 - 새로운 시장진출
국가-지역협력체 FTA	MERCOSUR-칠레 FTA	- 지역협력체로의 시장편입 - 새로운 시장 진출

9) 무역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력·사회·문화의 교류 등이 있다.

10) 삼성경제연구소,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3면.

11) 여기에서 지역협력체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권을 가지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집단(bloc)을 의미한다.

12) FTA의 유형을 당사국의 수가 2개국인 양자간 FTA(bilateral FTA), 당사국의 수가 3개국 내지 5개국 이하인 복수국가 사이의 FTA(plurilateral FTA), 그리고 당사국이 6개국 이상인 준다자간 FTA(quasi-multilateral FTA)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77면].

13)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79면.

유 형	예	효 과
지역협력체간 FTA	FTAA	- 대륙간 규모의 시장 확대 - 다자주의 수렴

첫째, 국가간 FTA는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FTA를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각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FT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FTA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FTA 중에서 한-칠레 FTA가 양국간 FTA의 예이며, 복수국간 FTA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FTA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FTA는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MERCOSUR FTA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⁴⁾ 멕시코-EU FTA와 같이 어느 국가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FTA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가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FTA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ERCOSUR와 NAFTA 사이의

14) 칠레는 MERCOSUR와 FTA를 체결하면서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다.

FTA인 FTAA, 그리고 MERCOSUR와 EU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¹⁵⁾

2. FTA의 규범적 역할

(1) 국제규범적 역할

국제무역에 관하여 FTA와 WTO 규범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FTA는 WTO 규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FTA는 체결국 사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의 축소로 역내무역을 증가시켜 당사국이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당사국들은 FTA라는 규범을 공유하여 역내무역을 규율한다. 그러나 이점은 FTA를 체결하지 못한 역외국에게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즉, FTA를 통하여 협정의 체결국들은 역내무역을 확대하면서 역외국에게는 기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외국의 시장접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협정의 당사국 사이에도 대외관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역갈절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¹⁶⁾

이와 같이 FTA가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무역기준을 제시하게 하므로,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FTA가 WTO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주의 현상을 공고히 하고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역내국 사이의 무역확대와 이를 보호하는 FTA의 기능이 역외국에

15)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78면.

16) 김동훈·김봉철·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26면.

17) 삼성경제연구소,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0. 23, 7면.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무역의 전반적인 확대와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WTO 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시장접근을 원하는 역외국에게 당해 지역의 국가 또는 지역경제협력체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결국은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¹⁸⁾을 일으켜 FTA 체결현상이 확산되도록 한다.

WTO 규범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비해서는 그 대상국이 많은 반면에 구체적인 규범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FTA는 협정의 당사국만을 강력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WTO 규범과 FTA의 규범성은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국제경제규범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FTA들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고 WTO 규범과도 조화되어, FTA의 배타성은 줄이면서도 무역규범성은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WTO는 여러 가지 면에서 FTA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면 WTO와 FTA의 원활한 조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안정적 규제와 무역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복수국간의 FTA 체결이나 국가간 연쇄적인 FTA는, WTO가 지향하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제시할 수 있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

FTA가 담당하는 국제경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은, FTA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FTA의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 사

18) A·B국이 FTA를 체결하고 이어서 B·C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A국과 C국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 만일 A국과 C국 사이에도 FTA가 체결된다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단일기준의 무역규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FTA와 지역무역협정의 도미노 현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ichard E Baldwin,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Richard E. Baldwin, P. Haaparanta and J. Kiander (Eds.), *Expanding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5]를 참고할 것.

이의 FTA는 당사국 사이의 공통적 무역규범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즉, 당사국은 무역규범을 공유하여 보다 완전한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FTA가 신속한 분쟁해결의 도구로 작용한다. 어느 FTA가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WTO 규범보다 세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국은 당해 FTA의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무역규제가 가능하다.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에 FTA를 체결하는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는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인접한 지역경제협력체에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가 서로 인접하거나 공동의 역내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FTA 체결국은 상대방 지역경제협력체에 편입될 것이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가 인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자는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의 체제 밖으로 역외무역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결국 FTA가 지역경제협력체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WTO 규범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하는데, 이를 통하여 각 지역경제협력체는 더욱 큰 규모의 단위로 통합하거나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FTA 규범이 WTO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¹⁹⁾

(2) 국내규범적 역할

FTA를 통하여 마련된 무역규범과 기준은 국제경제규범으로서의 역

19)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10-111면.

할 외에도 국내규범으로서 일종의 ‘법적 자원’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당사국들은 서로의 역내무역에 대하여 무역규범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국들 사이에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FTA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FTA로 무역과 관련된 규범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와 이익창출을 가져온다면, FTA를 체결한 국가에게는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구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이다.²⁰⁾

FTA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인 것이다. 어느 국가가 다양한 국가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법적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을 잘 운용하여 무역과 국가경제에 있어서 발전을 얻을 수 있다면, 산업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즉, FTA를 체결하기 위해 국내법을 다양하게 보완한 국가는 규범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안정된 국내규범을 보유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다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차원의 견고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FTA는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당사국이 FTA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정

20) 국가의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근간을 의미한다. FTA로 얻어진 법률적 기반이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양자를 비슷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폐쇄적인 무역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FTA 체결을 통하여 국제경제규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미래에 있을 다른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다자주의 협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²¹⁾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과 비준, 그리고 의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이 비준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서명 후 비준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FTA가 국내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직접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국내 재판에서 FTA가 사안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FTA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FTA의 체결로 인하여 생겨난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법과 FTA 사이에 특별법·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FTA의 규범 기준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²²⁾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내적 효력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

21)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경제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국가는 선진국 등과 FTA를 체결하거나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무역량이 적거나 보완성이 약한 국가 사이에 FTA가 체결되는 것은 무역에 관한 공동의 규범을 확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훈련소’를 얻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점도 일종의 법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칠레의 FTA도 다른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WTO 차원의 협상과 같은 국제적 경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협상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22) 대법원의 판례도, 조약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도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GATT의 직접적용을 인정하였다(1992. 7. 14, 대판 91누 10763; 1998. 8. 21, 97누13115 사건 참고).

요한 국가에서는 FTA의 체결이 곧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내입법을 촉구하는 의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FTA의 내용이 국내의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FTA가 직접적인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상치된다는 것만으로 관련 국내법이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협정에 의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령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일부 국내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결국 FTA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그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²³⁾

3.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과 규제

(1) GATT 제24조

FTA에 대한 WTO의 근거규정은 GATT 제24조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가 있는데,²⁴⁾ 가장 중심

23)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115면.

24) GATT와 WTO 등 다자주의 체제가 FTA 체결과 같은 지역주의를 인정하는 규정

이 되는 조항은 GATT 제24조이다. GATT 제24조는 FTA와 더불어 관세동맹까지 함께 지역무역협정으로 묶어 규율하고 있다.²⁵⁾

GATT 제1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를 통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동맹이나 FT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는 일부 국가들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FTA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거나 이를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²⁶⁾ 지역무역협정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상업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때에

을 둔 이유에 관하여,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자주의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간의 무역을 통합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적 통합에 의하여 무역과 생산 요소의 흐름이 보다 자유롭게 되므로, 경제적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 처럼 되는 ‘준국가적인’ 지위는 다른 다자주의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1930년대 유행하던 차별적인 양국간 주의(양국 사이에는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심한 차별이 발생)로 역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째, GATT 제24조 등 지역주의 규정은 다자주의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추구’에 보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pp. 25-26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5, 264-265면에서 재인용].

25) Mitsuo Matsushita · Thomas J. Schoenbaum ·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p. 555.

26) GATT 제24조 원문에서는 ‘관세와 다른 상업적 규제’(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는,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에 지역무역협정을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외에도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역외국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보다 높은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즉시 WTO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통보해야 하고, 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제출한 계획 또는 일정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상품무역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²⁷⁾

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T 조문그룹은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확정하여 WTO 설립협정에 포함시켰다.²⁸⁾ 양해에 나타난 회원국의 주요 합의내용은, 관세동맹과 FTA 및 이들의 잠정협정이 GATT 제24조에 합치하기 위해서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 및 징수관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양해는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기타 상업적 규제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4조 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27) 원래 GATT 규정에는 ‘채약국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의 전문에 따라 ‘WTO 상품무역위원회’로 변동되었다.

28)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상품무역협정)를 구성하고 있는 GATT 1994의 일부이며, ‘GATT 1947의 조문해석에 관한 7개의 양해’ 중의 하나이다.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하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잠정협정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양해규정을 통해서 회원국이 합의하였다.²⁹⁾

(2) 허용조항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은 1979년 11월 28일의 GATT 결정(L4903)으로, 공식명칭은 ‘개발도상국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주의, 전면적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st-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이다. 허용조항은 WTO 회원국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교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 허용조항을 ‘수권조항’ 또는 ‘권능부여조항’이라고도 부른다.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³⁰⁾

본 허용조항 제2항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의

29) 이밖에도 회원국은 제24조 제 6 항과 관련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과, 이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합의하였다. 또한 양해규정은, 제24조 제 7 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GATT 관련 규정 및 양해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되고 작업반은 그 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관세동맹과 FTA의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협정의 중대한 변경 또는 진전사항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GATT 제22·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42호, 법무부, 2001. 12, 47면].

30)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FTA 또는 기타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해서는,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를 참고할 것.

인하와 철폐를 통한 특혜적인 FTA의 체결을 허용한다.³¹⁾ 허용조항 제 3항은 GATT 제24조 4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사이의 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본 항에서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FTA에 관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이러한 FTA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facilitate and promote)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undue difficulties)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GATT 제24조나 GATS 제5조와 달리 허용조항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 자유화에 관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FTA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와 달리 이러한 FTA들이 최혜국대우 감소 조치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4항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의 도입과 수정 또는 철폐의 경우에는 통보되어야 하며, 제3국이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통보는 WTO 무역 및 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에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FTA에 대한 것과 같이 심층적인 검토절차를 자동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대한 통보와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의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GATT 제24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FTA의 절차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어느 개발도상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서 WTO가 허용조항에 근거

31) Kim, Dong-Hoon ·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p. 344.

한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어느 국가의 FTA에 대해서 허용조항을 적용받거나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WTO의 회원국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허용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 당사자가 모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어야 한다. 즉,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 WTO가 인정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WTO는 개발도상국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UN이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WTO에 통보되는 FTA의 내용이 WTO 체계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즉, 해당 FTA는 WTO 규범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WTO 회원국들의 용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GATS 제5조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탄생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상인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제 2 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5 조를 통해 특정 국가들의 특혜적 서비스 무역협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FTA 등 지역무역협정으로서의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근거조항이 된다.

GATS 제 5 조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GATS 제 5 조 제 4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처럼 서비스 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GATT 제24조 제 5 항의 내용과 같이 협정 이전보다 역

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GATS 제 5 조 제 1 항은 GATA 제24조 제 8 항처럼 서비스에 관한 지역 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³²⁾ 이외에도 기존의 차별조치들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차별을 신설 또는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협정을 완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ATS 제 5 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협정 또는 개발도상국 사이에 서비스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즉, GATS 제 5 조는 GATT 제24조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의 내용을 결합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³³⁾

GATS 제 5 조가 GATT 제24조와 다른 점은 관세동맹, FTA, 잠정협정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무역의 성격상 관세나 수량제한 등의 역할이 크지 않아 관세동맹의 개념을 서비스 무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으나,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GATT 체제에서는 통보된 FTA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검토가 임시적인 작업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정의 검토에 관련된 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32) 다만 GATT 제24조의 ‘substantially all the trade’라는 표현대신 GATS 제 5 조는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라고 표현하고 있다.

33)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13호, 법무부, 1997. 2, 18-19면.

다자주의 규범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작업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³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WTO 내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WTO 일반위원회(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는 1996년 2월 7일 WTO내 상설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³⁵⁾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에 FTA 체결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기존의 GATT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WTO 회원국들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³⁶⁾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부여한 위임사항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공식위원회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개최한다.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은, 첫째, 상품무역위원회와 서비스무역위원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각 지역무역협정이 운영되는 것을 격년마다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하여 관련기구에 권고한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협정의 검토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한다. 넷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주의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외에도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활동을 종합하여 매년 WTO 일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존의

34)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46면.

35) WTO Doc WT/L/127.

36) 원용걸, 앞의 논문, 22면.

작업반이 하던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구에 보고하는 등 일반 위원회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GATT 체제의 해당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주의와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³⁷⁾

WTO 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하려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³⁸⁾ 그러나 협정 검토의 근거가 되는 관련 WTO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더욱이 회원국들이 강화된 분쟁해결기능을 의식하면서 검토된 협정의 결론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협정적체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실망과 회의론이 WTO 내·외에서 제기되었다.³⁹⁾

그 결과 DDA 협상에서도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 및 절차의 개정이 논의되었다. 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WTO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강화에 대한 각

37)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유철, 앞의 논문, 48-50면]을 참고할 것.

38) 우리나라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WTO에 대한 통보 및 정보제공은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지고 역통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GATT 제24조에 나타나는 관세는 실행관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요산업부분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39)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34면.

국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투명한 일처리와 올바른 정보공급을 위한 WTO 차원의 틀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 마련된 이른바 “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⁴⁰⁾ 합의가 그것인데,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한 지역무역협정 정보와 검토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⁴¹⁾

제 2 절 세이프가드

1. 세이프가드와 WTO 규정

세이프가드(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 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수입제한의 방법은 수입수량규제, 수입가격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 있다. 수량규제에는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고, 가격규제로는 관세인상, 가격감시제, 최소가격설정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규제로는 수입허가, 통관절차, 수입감시제도 등이 사용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 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관련 산업이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40) WTO Decision of 14 December 2006, *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WT/L/671, 18 December 2006.

41) 최근의 결과에 관해서는,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port (2007)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the General Council*, WT/REG/18, 3 December 2007]의 내용을 참고할 것.

부여하여 국제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세이프가드는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을 국가가 차단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원만한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국가는 이에 영향을 받는 수출국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복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다.

GATT 제19조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체결되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수입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으로⁴²⁾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어야 하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수입의 증가는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도 포함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수입증가량, 시장점유율, 판매량, 생산량, 생산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적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는 반드시 관세인상의 방법만이 가능하다. 세이프가드로서 수입국은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을 통한 수입의 제한과 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치를 한다.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대상범위를 기준으로 다자간 조치(global measures), 양자간 조치(bilateral measures), 지역적 조치(regional measures)

42) 원래 GATT 제19조는 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협정의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과 아르헨티나의 신발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WTO 패널 및 상소보고서는 ‘예상하지 못한’의 요건을 조치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라고 판정하였다.

의 형태로 구분된다.⁴³⁾ 다자간 세이프가드는 모든 수입원을 대상으로 조치를 발동하는 것으로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일치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필요한 정도만 인정되고, 세이프가드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치로서,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발동요건, 사전협의, 보상수준 등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규율한다. 지역적 세이프가드는 다자간 및 양자간 조치 이외의 모든 경우로서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⁴⁴⁾

2.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체계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방식 등에 관한 국내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⁴⁵⁾ 등이 있다. 이러한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구체적인 규제 종류는 수입수량규제와 수입가격규제로 나누어진다.

43) 다자간 조치를 ‘포괄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양자간 조치를 ‘쌍무조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44) EU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EU내 일부 지역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하며, EU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EU내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45) 산업피해구제법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되었다. 본 법의 주된 내용은, 대외무역법에 있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제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수입상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WTO 협정에 맞춘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피해구제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 우선 수입수량규제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6조부터 제28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6조 수입수량제한조치
- 제27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 제28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등

이밖에, 수입가격규제인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가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관세법 제65조부터 제68조는 다음과 같다.

-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등
-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67조의 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아울러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 내지 제22조의 3은,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신청부터 시행, 해제 그리고 연장 및 재검토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부터 제22조의 3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신청
- 제16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 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 제20조의 2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 제21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 제22조의 2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 제22조의 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특히, 본법 제21조부터 제22조의 3까지의 규정들은, 일부 품목 또는 특정국에 대한 특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⁴⁶⁾

3. FTA에서 세이프가드의 중요성

GATT의 성립 이후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여덟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각국의 관세는 평균 약 35%에서 약 4%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게다가 FTA 등 지역주의의 영향도 각국의 관세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각국은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였으며, 관세의 축소는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중반부터 비관세 무역장벽이 확대되어 관세의 축소를 통한 무역확대 효과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위생·검역 기준, 기술규범, 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등 비관세 무역장벽은 GATT의 규정과 WTO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아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비관세 장벽의 증가는 다자주의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의 상황에서 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무역규범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무역확대효과를 더욱 현저하게 경감시켰다. 실제로 각국은 국제경쟁력이 떨

46)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규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무역위원회, 2007. 1, 91-92면.

어지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용하고 있다.⁴⁷⁾

FTA의 체결 증가로 위와 같은 추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FTA로 인하여 당사국은 역내무역에 있어서 대체로 WTO 또는 다자주의 차원의 관세수준보다 더욱 낮은 관세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비관세 무역장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의 무역장벽의 축소로 인한 역내무역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역외무역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의 발생과 무역의 축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무역장벽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세이프가드를 비롯하여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도에서는 FTA의 확대에 의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가 나타난다. 무역구제제도는 각국이 WTO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⁴⁸⁾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로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다. 게다가 FTA가 가지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은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즉 배타성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그리고 각 FTA마다 다른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은 WTO 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는 FTA 체결 당사국 사이의 무역구제제도가 GATT 제24조의 내용인 ‘제한적인 무역규제를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하여 WTO와 FTA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무역구제제도 중에서도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는 상대방 국

47)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338면.

48) 무역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을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며,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이다[변중립, 『반덤핑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월간 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4, 67면].

가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FTA과 관련하여 서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조치의 대상이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이기 때문에, 성격상 WTO 규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긴급한 보호 필요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정한 무역행위에도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조치나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르게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을 넘어서 규제할 부분이 더욱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 3 절 FTA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분쟁

1. FTA에 관한 분쟁의 주요 내용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GATT 또는 WTO 차원에서 직접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논점으로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1994년까지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GATT 패널이 설치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는데,⁴⁹⁾ 모두 EC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패널 보고서도 EC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95년 이후 WTO에서 지역무역협정 문제로 패널이 판정을 내린 경우도 몇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과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양적인 증가, 그리고 GATT 제24조 등 관련 WTO 규정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많지 않은 이유는,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GATT 제22조와 제23조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기 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불분명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판정을 받을만한 동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⁰⁾ 이러한 이유로 FTA

49) 예를 들면, The Fourth Lomé Convention and EU Restrictions on the Banana Imports 사건 등이 있다.

50)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서는 당연히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운영에 있어서

또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분쟁에서는 제소국이 해당 협정 자체와 WTO 규범의 합치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피제소국의 특정 조치가 GATT 또는 WTO의 협정에 위배되며 GATT의 지역주의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은 대부분 GATT 제24조에 관한 것이었다. GATT 제24조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경우는 인도와 터키의 섬유와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사건(Turke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Case)⁵¹⁾과 한국과 미국의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EC와 캐나다의 Auto Pact 사건, 일본과 EC가 제소한 아르헨티나의 수입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 EC와 미국의 Wheat Gluten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으며 관련 규정의 해석 또는 운영에 대한 단편적인 판정만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지역무역협정과 세이프가드가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본다.

2.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사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Case)에서, FTA에 근거한 차별적인 세이프가드가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은 한국, 일

일정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의 모호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 3 국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요구할 실익이 큰 경우가 많지 않았다[최경립,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36호, 법무부, 2000, 205면].

51) WTO Panel Report, *Turke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WT/DS34/R, adopted 31 May 1999; WTO Appellate Body Report, *Turke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WT/DS34/AB/R, adopted 22 October 1999.

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탄소강관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2000년 3월부터 수입되는 탄소강관에 대하여 기본관세 2%에 추가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 단계에서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정작 조사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 단계에서는 NAFTA 협정에 의하여 탄소강관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것 등 12개 항목을 들어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6월에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2001년 10월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⁵²⁾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은 미국의 조치가 GATT 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에 일치하였으나, NAFT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패널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고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4조 제 8 항이 규정하는 ‘당사국 사이의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의 철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NAFTA의 형성이 GATT 제24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이 제시한 만큼 이를 반박할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한국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서 아직 NAFTA의 GATT 제24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NAFTA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의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패널은 미국의 차별적인 세이프가드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⁵³⁾

52) Lori Yi, Safeguar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 2001. pp. 214~220.

더 나아가 패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FTA의 당사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야말로 FTA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a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의 조사대상과 조치대상의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병행관계(parallelism)가 성립하고, NAFTA 당사국에 GATT 제24조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NAFTA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는 허용된다.⁵⁴⁾

그러나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이 병행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2002년 채택된 상소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조사의 대상범위와 세이프가드의 대상범위 사이에 일치여부의 입증책임이 조치를 취한 국가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하여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⁵⁵⁾ 반면, GATT 제24조와 관련하여 NAFTA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의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정을 회피하였다.⁵⁶⁾

3. 기타 FTA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WTO의 판정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가 쟁점의 핵심사항으로 드러난 경우는 아니지만,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53) WTO Panel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WT/DS202/R, adopted 29 October 2001, Para. 7.144.

54)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7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7, 37-38면.

55) WTO Appellate Body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WT/DS202/AB/R, adopted 15 February 2002, Para. 186.

56) 무역위원회, □□Trade Remedy Report□□ 1호, 2002. 3. 13, 6면.

한 경우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에 앞서, 아르헨티나의 수입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사건(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Case)이 WTO에서 논의된 바 있다. 1997년 아르헨티나는 수입신발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에서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MERCOSUR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포함하면서도 세이프가드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일본과 EC가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한 것이다.

WTO 패널은 관세동맹인 MERCOSUR의 당사국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면 이 조사를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의 대상에서 관세동맹의 당사국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이른바 ‘parallelism’ 개념이 사용된 것이다.⁵⁷⁾ 이러한 판정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1 항 주석과⁵⁸⁾ GATT 제 24조의 해석을 그 근거로 하였다.⁵⁹⁾ 이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판정을 확인하면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1 항 주석과 GATT 제 24조의 해석에 관하여 패널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⁶⁰⁾

57) WTO Panel Report,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WT/DS121/R, adopted 25 June 1999, Para. 8.87.

58)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1 항의 주석은 ‘관세동맹이 그 자체로서 또는 한 당사국을 대표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패널은 이 규정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주체를 나타낸 것이지 그 대상국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2 조 제 1 항의 주석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규정한 2조 2항을 연관시켜 해석하면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의 대상범위와 세이프가드의 대상범위 사이에는 병행관계(parallelism)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59) 패널은 GATT 제 24조 제 8 항이 관세동맹 회원국간 사실상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며 GATT 제 11~15조와 제 20조에 의한 조치는 예외로 하므로, 세이프가드에 관한 GATT 제 19조 규정은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세이프가드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단기간 발동된다면 제 24조 제 8 항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제 24조 제 8 항이 관세동맹 회원국간 세이프가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제 2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10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MERCOSUR 당사국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미국이 캐나다의 Wheat Gluten을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에는 포함시키고 세이프가드의 대상에서는 제외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논의된 사건(U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C Case)이 있었다.⁶¹⁾ 1999년 EC는 미국이 산업피해조사와 세이프가드의 대상범위를 달리한 것이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산업피해판정을 내린 후에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산업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캐나다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세이프가드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2 항은 NAFTA와 같은 FTA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GATT 제24 조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으로부터의 예외 또는 일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GATT 제24조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위반에 대한 변호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따라 패널은 GATT 제24조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60) WTO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WT/DS121/AB/R, adopted 14 December 1999, Paras. 106-108.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1 항은 관세동맹 전체나 한 회원국을 대표하여 관세동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사안과 같이 MERCOSUR가 아닌 아르헨티나가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발동한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또한 패널은 GATT 제24조가 다른 GATT 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GATT 제24조 제 8 항(a)와 제 5(a)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는 당시에 도입되어야 하고, 그 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관세동맹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GATT 제24조를 근거로 들지 않았으며 패널도 세이프가드가 GATT 제24조에 따른 관세동맹이 성립되는 당시에 도입된 것인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여부를 GATT 제24조를 통해서 검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61) WTO Panel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C*, WT/DS166/R, adopted 31 July 2000;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C*, WT/DS166/AB/R, adopted 22 December 2000,

있는지, 그리고 FTA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세이프가드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2 조 제 1 항과 제 4 조 제 2 항의 분석을 통하여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되는 제품 사이에는 병행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⁶²⁾ 미국이 산업피해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캐나다의 Wheat Gluten을 포함하고도 세이프가드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이러한 병행관계 원칙을 통하여 패널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이밖에, 미국의 양고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발이 논의된 사건(U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ase)도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 바 있다.⁶³⁾

제 4 절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많은 FTA는 다양한 형태로 세이프가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비교를 통하여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FTA 규율의 공통적인 문제점 및 논점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바 있는 선행연구⁶⁴⁾의 정리와 검토를 통하여, 아래에서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규범 및 FTA 규정들의 비교에 따른 몇 가지 유용한 논점들을 제시한다.

62) 이러한 결론은 아르헨티나 수입신발사건과 비슷한 내용이다.

63) WTO Panel Report, *US-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WT/DS177/R and WT/DS178/R, adopted 21 December 2000;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WT/DS177/AB/R and WT/DS178/AB/R, adopted 16 May 2001.

64)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02.

1. 세이프가드의 종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의 종류(Types of safeguards)에는 양자간 조치, 지역적 조치 그리고 다자간 조치로 나눌 수 있는데,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바로 이러한 세이프가드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여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규율하느냐 하는 것이다.

GATT 제19조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수입원과는 상관없이 특정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다자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주석 1⁶⁵⁾을 통해 관세동맹에서는 지역간 조치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FTA에도 적용된다고 본다.⁶⁶⁾

대부분의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WTO 협정과 유사한 다자간 조치를 WTO 규범을 인용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양자간 조치 또는 지역간 조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NAFTA는 10년의 이행기간에 한하여 협정 체결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양자간 조치가 가능하며, 다자간 조치의 경우에도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65) Kaye Scholer · 최진혁, 앞의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41면.

66)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 패널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2 조 주석 1의 마지막 문장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GATT 제 19조와 GATT 제24조 제 8 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관세동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24조 제 8 항(a)만이 아니라 FTA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24조 제 8 항(b)를 포함한 제24조 제 8 항을 지칭하고 있는 만큼, 주석 1의 첫 세 문장이 관세동맹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마지막 문장에 의해 FTA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봉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무역구제□□ 13호, 무역위원회, 2004. 1, 206면]을 참고할 것.

터의 수입이 상당한 양이 아니고 심각한 피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다. MERCOSUR와 인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제16조는, 기본적으로 WTO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부속서 4의 제1항에서 WTO의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가 당사국 사이에도 인정됨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본 협정 제15조는 양자간에만 적용되는 ‘특혜적 세이프가드조치’(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부속서 4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며, 부속서 4의 제5조는 이러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밖에 칠레-멕시코 FTA 역시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⁶⁷⁾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지역간 조치를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다자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본 협정 제24조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규범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본 협정 당사국의 특별 지역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EC-멕시코 사이의 FTA는 WTO 협정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양자간 조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본 협정의 일부로 포함된 ‘2000년 3월 23일의 EC-멕시코 합동위원회 결정’(The Decision No. 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 제15조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GATT/WTO 세이프가드 규범이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치 않는다는 점에서 GATT 제24조 5항의 ‘지역협정의 설립이후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역협정 설립 이전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67) 칠레와 멕시코의 FTA 제 6 장 제 2 조 · 제 3 조[신용대 · 서동혁, □□칠레-멕시코 ·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산업연구원, 1999, 69-72면].

2.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

FTA 체결국에 소규모의 무역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 9 조처럼 세이프가드의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에 특별한 세이프가드 규정(Safeguard rules favouring developing or small economy countries)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수출규모가 작고 수출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세이프가드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이들 경제에는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상당한 수준인 경우 또는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수출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FTA의 세이프가드 규범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FTA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명시하여,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한 수입량의 한계선을 두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체결되는 FTA의 특혜근거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조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합계가 해당 품목의 전체수입량에 9%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전체 수입물량의 3% 이하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간과 재적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가와는 다른 우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⁶⁸⁾

68)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조 제2항.

NAFTA는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제규모나 개발도상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량에 의해 적용배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⁶⁹⁾ 현재 논의 중인 FTAA 협정안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의 8% 이하가 되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⁷⁰⁾ 이것은 개발도상국가인 남미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지역의 FTA인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Agreement)의 회원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이다. 본 협정은 협정의 당사국들을 일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최저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두 단계로 나누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즉, 최저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SAFTA 제16조 8항은, 최저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합계가 전체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최저개발도상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

GATT 제19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가 협정 체결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에 따른 결과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수입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Case)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보고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요건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별도의 요건이라고 판정하고 있다.⁷¹⁾

69) NAFTA 제802조.

70) FTAA안 제10조.

71) WTO Panel Report,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예견치 못한 상황의 발전’에 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WTO 상소기구는 ‘예견치 못한(unforeseen)’이 ‘예견할 수 없는(unforeseeable)’과는 다른 의미로서 ‘기대하지 않은(unexpected)’와 같은 뜻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예견치 못한’은 ‘예견할 수 없는’ 보다는 덜 엄격한 기준을 암시하며, 이는 이론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예견되었느냐, 예견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논점에 관하여, 많은 FTA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의 증가가 FTA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AFTA 제801조는 피해를 야기하는 수입의 증가가 NAFTA 체결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예견하지 못한 결과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C-멕시코 FTA는, 피해를 야기하는 수입증가의 원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증가의 원인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FTA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에 타회원국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4. 피해의 원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중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원인(Cause of injury)으로서의 수입증가가 다른 여러 피해 요인들의 하나(cause)로서 충분한지, 수입증가의 요인이 피해를 야기하는

WT/DS121/R, adopted 25 June 1999, Para. 91.

주요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GATT/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야기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단순한 원인’(cause)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수입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의 WTO 패널보고서는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하나의 역할을 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양자간에 인과적인 연결(connection)을 가질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⁷²⁾

이러한 피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NAFTA 제801조는 수입의 증가가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수입의 증가는 국내산업의 피해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원인중의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주요한(substantial)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FTA에서는 NAFTA와 같은 ‘주요한 원인’(substantial cause) 요건 대신 ‘단순한 원인’(cause)의 요건을 규정한다. EC-멕시코 FTA 역시 WTO 규범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5. 피해의 기준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Standard of injury)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각각의 FTA가 다양한 형태로 피해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FTA에 나타난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72) WTO Panel Report,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WT/DS121/R, adopted 25 June 1999, Para. 8. 250.

첫 번째 규정방식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정방식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그러한 피해의 우려는 제외)’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세 번째 규정방식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국내경제의 어느 분야’이든 심각한 장애(serious disturbance)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4조는 첫 번째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NAFTA는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규정방식을 혼합하였다. 즉, 본 협정에 따르면,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더하여 ‘국내경제 상황에 심각한 악화’(serious deterioration)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⁷³⁾ 많은 유럽의 FTA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EC-멕시코 FTA와 EFTA-터키 FTA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로 인한 세이프가드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외에도 ‘국내경제의 일부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다.⁷⁴⁾

73)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4조.

74) EC-멕시코 FTA 제15조 제 1 항.

6.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Forms of safeguard measures)의 문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협정의 당사국 사이에 약속하였던 특혜관세의 부여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세의 인상을 포함하면서 수량규제나 쿼터제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기보다는, 조치를 취하는 해당국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치의 내용까지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GATT 제19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GATT 체결에 따른 의무 또는 양허의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협정 제 5 조는, 이에 더하여 수량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NAFTA의 경우,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해서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부여의 정지 또는 관세 인상만을 허용하고 있으나,⁷⁵⁾ 다자간 조치에 관해서는 WTO와 같이 수량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다.⁷⁶⁾

EC-멕시코 FTA 제15조는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인도-스리랑카 FTA 제8조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 칠레-멕시코 FTA나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콜롬비아 FTA는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와 관세인상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EC-남아프리카 FTA 제24조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또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변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다자간 조치의 경우에는 WTO 규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75) NAFTA 부속서 제801조.

76) NAFTA 제802조.

7.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Duration of safeguard measures)은 FTA마다 다양하게 규정된다. WTO 협정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기간동안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규범이 8년이라는 한계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조치의 경우에 4년을 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NAFTA의 경우에는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3년 이내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행기간 이후에는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EC-멕시코 FTA는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칠레-멕시코 FTA는 예외 없이 1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남아프리카에 한정하여 국가의 유치산업이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에 한하여 12년 동안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다.⁷⁷⁾

MERCOSUR-인도 특혜협정 제3조 및 제8조와 부속서 4는 2년의 한계기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칠레-인도 특혜협정의 경우, 본 협정의 부속서 D 제4조에서 매년 달라지는 구체적인 세이프가드의 적용 한계를 명시하였다.

8. 당사국간 협의의 절차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국간의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의 시기와 절차(Consultations process)에 관하여 여러 FTA가 다양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협의절차와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기준은,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단계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종결정의 단계가 된다. 일부 FTA는

77)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5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최종결정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과정에서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이에 관한 다른 형태의 FTA 규정들은, 조사단계 이전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협의중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조는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협의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종 결정이전에 행해져야 하며, 조사는 협의과정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FTA-터키 FTA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종료되기 전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다.⁷⁸⁾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는 감시절차의 발동 이후 실제 조치의 개시 이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⁷⁹⁾

9. 보상의 형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보상의 형태(Form of compensation)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FTA의 규정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수입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하는 정도로 다른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진행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둘째, 세이프가드를 적용받은 수출국이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수입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하여 보상을 얻는 것이다. 셋째, 세이프가드가 부과된 후 일정기간동안은 위의 보상조치들 중 어느 것도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78) EFTA-터키 FTA 제23조.

79)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6조.

WTO 규범은 이에 관하여 위의 방식들을 모두 혼합하고 있다. 즉, GATT 제19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수입국은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 조치를 통해 수출국에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수준에 대해 당사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수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조 제3항은 이러한 보복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증가로 인해 취해진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3년 이내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AFTA 및 EC-멕시코 FTA의 경우,⁸⁰⁾ WTO 규정과 동일하게 처음 두가지 보상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보복조치의 금지기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의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0) NAFTA 제801.4조 및 EC-멕시코 FTA 제15.4조.

제 3 장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과 비교

제 1 절 동북아시아 3국의 FTA

1. 한국의 FTA

동북아시아 3국은 WTO 체결이후 각기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지지하거나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기간 동안 FTA 체결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전반에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 이후에 지역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WTO 체제와는 별도의 FTA 체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⁸¹⁾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대처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TA가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WTO 보다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 스스로 FTA의 체결 등이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⁸²⁾ 많은 국내 기업들은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적인 기업

81) 즉,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82) 김동훈·김봉철·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30면.

들과 제휴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FTA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수단으로 평가되었다.⁸³⁾

여러 국가들과 함께 FTA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한-칠레 FTA⁸⁴⁾ 체결 이후 한-싱가포르 FTA,⁸⁵⁾ 한-EFTA FTA,⁸⁶⁾ 한-ASEAN FTA, 한-미 FTA 등이 체결되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FTA 전략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하는 것이다.⁸⁷⁾ 넷째,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⁸⁸⁾ 그러나, 한-칠레 FTA 체결 시기부터 국내외적인 여러 반대 및 우려의 의견이 적지 않았다.

2. 중국의 FTA

중국은 1970년대부터 오랜 시간동안 국제경제질서에 합류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왔고,⁸⁹⁾ 2000년 WTO의 가입과 함께 국

83) 김봉철, 앞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155-156면.

84) 2004년 4월 발효.

85) 2006년 3월 발효.

86) 2006년 9월 발효.

87)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88)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제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⁹⁰⁾ 또한 중국 정부는 지역무역협정 역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적 배경으로 홍콩 및 마카오와 CEPA를 체결하였고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에 더해 기존의 방콕협정에 가입하면서 APTA로의 전환에도 동참한 바 있다.⁹¹⁾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정책의 특징은, 우선 동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며, 그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지역주의 정책에 적절히 이용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 FTA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동남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경쟁하는 것도 양국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 국가와의 지역연계 강화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다. 넷째, 중국의 지역무역협정은 시장확대를 통한 중국의 농산물과 가격경쟁력 있는 제조물의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기능은 국제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미국 중심의 세계무역정책에 상당한 반항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주의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8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uang Weiping, 『Chin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Francis Snyder (Ed.), *Regional and Glob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Hart Publishing, Oxford, 2002, pp. 245-262]을 참고할 것.

90) 중국의 WTO 가입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에 관해서는, [Elena Ianchovichina and Terrie Walmsley, 『The impact of China's WTO Accession on East Asi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August 2003]를 참고할 것.

91) 중국의 FTA 체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훈·김봉철·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55면 이하]를 참고할 것.

3. 일본의 FTA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은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자주의 협상이 제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와중에 지역주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일본 내에서 고개를 들었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의 EPA⁹²⁾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GCC 등과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베트남, 인도 등과의 공동연구도 마무리되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FTA 대신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라는 이름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상관없이 EPA와 FTA는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은 세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일본은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미 ASEAN 소속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EP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SEAN 전체와 EP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ASEAN 지역에 투자를 늘려온 일본이 기존의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에서 일본의 개방정도는 공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인 반면,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하였다. 관련 분야의 경쟁력 차이와 정치적 영향력이 개방수준에 작용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지역무역협정을 경제적 수단에 더불어 외교적, 정치

92) 일-싱가포르 EPA는, 일본의 무역정책기반이 그동안 WTO를 통한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질서의 형성만을 주장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무역협정과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Won-Mog Cho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1), Oxford University, 2003, p. 52.]

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이 ASEAN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대국이 선진국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인 이유도 그러하다.⁹³⁾

제 2 절 한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6.1조에서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WTO 체계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범을 수용하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그 이외에 특별하지는 않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적용대상 무역에 있어서는 WTO 규정상의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뿐이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적용과 관련한 당사국 사이의 분쟁은 본 FTA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3장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6장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이중에서 제6.4조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이고, 제6.5조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이다.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제6.5조는 WTO 규범의 수용을 명시하는 간단한 조항임에 반해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는 제6.4조는 상당히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살펴보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상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

93) 이밖에, 일본 EPA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봉철, 앞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240면 이하를 참고할 것.

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실질적(substantial) 원인이 될 경우, 수입국은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⁹⁴⁾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하던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둘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세이프가드의 최대 발동기간은 2년이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2장의 상품무역분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2.11조를 통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 협정의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될 경우, 수입국은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⁹⁵⁾

이러한 세이프가드에 따라, 당사국은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던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⁹⁶⁾ 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세이프가드가 종료된 후 최소 3년

94) 한-싱가포르 FTA 제6.4조

95) 한-EFTA FTA 제2.11조 제2항

96) 한-EFTA FTA 제2.11조 제4항

동안은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다시 적용할 수 없다.⁹⁷⁾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단위로 수행한다.

4. 한-ASEAN 상품무역 FTA

한-ASEAN 상품무역 FTA는 제9조에서 모든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조 제1항에서는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당사국들이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개시되고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가 완성된 후 7년이 경과하는 과도기간 내에서만 유지된다.⁹⁸⁾ 본 협정상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관세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의무이행의 효과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의무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당사국의 영역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취해진다.⁹⁹⁾

97) 한-EFTA FTA 제2.11조 제5항

98)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2항.

99)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3항.

본 협정상의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수단은 관세율의 추가인하의 정지 또는 관세율의 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초 3년간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간은 과도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이프가드 기간에 상관없이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함께 종료된다.

한-ASEAN 상품무역 FTA는 제9조 7항은 개발도상국인 ASEAN 국가들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본 항에 따르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전체 당사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한-미 FTA

한-미 FTA는 무역구제 분야에 관한 제10장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와 함께 일반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절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은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의 구성

제10장 무역구제 제1절 세이프가드	제10.1조	세이프가드의 적용
	제10.2조	조건 및 제한
	제10.3조	잠정조치
	제10.4조	보 상
	제10.5조	다자간 세이프가드
	제10.6조	정 의

우선 제10.5조에서는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면서, 본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와 WTO 규범상의 조치가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본 협정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관세율의 추가인하의 정지, 관세율의 인상, 계절별 관세율의 인상의 방법으로 취해지며,¹⁰⁰⁾ 당사국의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¹⁰¹⁾

본 협정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는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취해져야 하며, 2년의 기간과 1년의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도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¹⁰²⁾ 본 협정의 과도기간이라 함은 협정의 발효일 이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하며, 양허표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¹⁰³⁾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당사국이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제10.4조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당사국간의 보상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며, 협의에 따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이 보복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 3 절 중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1. APTA

APTA의 무역구제규정은, 제1장 제6조의 일반적인 비관세조치에 관한 내용 및 세이프가드 조치와 협의에 관한 제4장¹⁰⁴⁾에서 찾을 수 있

100) 한-미 FTA 제10.1조.

101) 한-미 FTA 제10.2조 4항.

102) 한-미 FTA 제10.2조 5항.

103) 한-미 FTA 제10.6조.

104) APTA 제17조 내지 제21조.

다. 본 협정 제6조는 APTA의 체약국이 양허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조치의 점진적인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¹⁰⁵⁾

본 협정 제4장 제17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체약국의 특혜양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하였다. 즉, APTA 체약국 원산지의 특정물품에 대해서 본 협정에 따른 특혜양허를 적용한 결과, 수입된 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물품을 제조하는 수입체약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특혜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¹⁰⁶⁾ 본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관련 사항을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통보하면서, 동시에 해당 체약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관련 체약국들이 90일 이내에 협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상임위원회는 양허의 정지를 확정하거나 양허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양허내용을 교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90일 이내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허정지로 영향을 받는 체약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임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최종결정을 채택한다.¹⁰⁷⁾ 위와 같은 사항들은 최대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한다.¹⁰⁸⁾

어느 체약국이 양허의 허용으로 인한 외환지급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¹⁰⁹⁾ 체약국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이 외환지급에 관한 WTO

105) 김봉철, 『중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무역구제□□ 26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4, 101면.

106) APTA 제17조 (i).

107) APTA 제17조 (ii).

108) APTA 제17조 (iii).

의 GATT 1994 양해조항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협정을 적용하여 체약국 사이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무역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체약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양허의 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¹¹⁰⁾

어느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을 고려해야 하는 본 협정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체약국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해당 체약국에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있는 후 120일 이내에 당사국 사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임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체약국이 이러한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상임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본 협정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¹¹¹⁾

본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체약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사이에 우호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분쟁을 접수한 후 120일 이내에 문제를 검토하여 권고해야 한다.¹¹²⁾

2. 중-ASEAN FTA

중-ASEAN 상품무역 FTA는 제9조에서 세이프가드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WTO 회원국인 본 협정의 체약국들은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¹¹³⁾ 체약국은 본 상품무역 협정의 이행기간 중에, 조기자유화조치를 포함한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관세를 인하한 결과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109) APTA 제18조.

110) APTA 제19조.

111) APTA 제20조.

112) APTA 제21조.

113)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1항.

특정 품목의 상품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에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¹¹⁴⁾ 위의 이행기간은 협정의 발효시점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관세제거 및 축소를 완료한 시점 이후 5년이 된다.¹¹⁵⁾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계약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¹¹⁶⁾ 이러한 조치는 최장 3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치는 위 이행기간의 만료와 함께 중단된다.¹¹⁷⁾

세이프가드를 취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WTO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WTO 규정들은 본 협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¹¹⁸⁾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는 해당국의 수입 점유율이 3% 이하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¹¹⁹⁾ 또한 이러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에 따른 보상을 구하는데 있어서, 관련 계약국은 관련 양허의 정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세이프가드 발동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¹²⁰⁾

3. 중-홍콩 및 마카오 CEPA

중-홍콩 및 마카오 CEPA는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차례로 무역구제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제9조에 따르면, 양자가 본 협정 부속서 I에 포함된 원산지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CEPA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품목 또는 유사한 품목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114)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3항.

115)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2항.

116)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4항.

117)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5항.

118)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6항.

119)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7항.

120)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9조 제8항.

품목에 대하여 일시적인 양허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며, 양자는 CEPA 제19조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¹²¹⁾

4. 중-칠레 FTA

중-칠레 FTA는 제6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¹²²⁾ 제1부는 양국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이며, 제2부는 일반적인 다자적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다.¹²³⁾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중-칠레 FTA 제6장의 구성

제1부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44조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
	제45조	최종적인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위한 기준
	제46조	조사절차 및 투명성 요건
	제47조	잠정 조치
	제48조	통 보
	제49조	보 상
	제50조	정 의
제2부 다자간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51조	다자간 세이프가드
	제52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문제

본 협정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관세축소를 정지하거나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¹²⁴⁾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1년의 기간

121) 중-홍콩 및 마카오 CEPA 제9조.

122) 중-칠레 FTA 제44조 내지 제52조.

123) 중-칠레 FTA 제51조 및 제52조.

124) 중-칠레 FTA 제44조 제2항.

동안 적용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세이프가드는 이행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¹²⁵⁾ 또한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본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¹²⁶⁾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나 GATT 제19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바 있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본 협정에 근거하여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다.¹²⁷⁾

피해 상황이 심각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형식의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²⁸⁾ 본 협정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조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는 본 협정에 준용된다.¹²⁹⁾ 이밖에, 본 협정은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체약국이 문서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45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³⁰⁾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이 WTO의 관련 협정들을 존중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¹³¹⁾

5. 중-파키스탄 FTA

중-파키스탄 FTA의 무역구제조치에 관련된 규정은, 중-칠레 FTA만큼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무역구제에 관한 제5장¹³²⁾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양자간 세이프가드,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

125) 중-칠레 FTA 제45조 제1항.

126) 중-칠레 FTA 제45조 제2항. 다만, 이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한하여 세이프가드를 다시 취할 수도 있다[중-칠레 FTA 제45조 제3항].

127) 중-칠레 FTA 제45조 제4항.

128) 중-칠레 FTA 제47조.

129) 중-칠레 FTA 제46조 제1항.

130) 중-칠레 FTA 제49조 제2항. 이러한 상응조치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적용을 상대방국에 통보해야 한다[중-칠레 FTA 제49조 제3항].

131) 중-칠레 FTA 제51조 및 제52조.

132) 중-파키스탄 FTA 제25조 내지 제27조.

들을 각각 두고 있다. 특히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은 매우 세밀하다.

본 협정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내용은 중-칠레 FTA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본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관세축소를 정지하거나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¹³³⁾ 다만,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2년의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연장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세이프가드는 이행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¹³⁴⁾ 또한 본 협정은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³⁵⁾

중-파키스탄 FTA는 양국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본 협정 제27조상의 양자간 세이프가드 이외에, 일반적인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WTO의 관련 협정들을 존중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¹³⁶⁾

제 4 절 일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1. 일-싱가포르 EPA

일-싱가포르 EPA는 제17조에서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8조에서 긴급조치(Emergency Measures)라는 제목으로 세이프가드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다.¹³⁷⁾

133)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제2항.

134)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제3항.

135)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제4항.

136) 중-파키스탄 FTA 제25조 및 제26조.

137) 일반적으로, 일본의 EPA 규정들은 상당수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Bilateral Safeguard Measures'라는 표제로 하나의 조항을 두거나 관련된 몇 개의 조항들을 묶어 새로운 장이나 부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ASEAN 소속 국가들과의 많은 EPA가 여기에 해당하

제18조 규정의 대부분은 일본과 싱가포르 사이에 본 EPA로 인한 무역장벽제거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명시된 요건에 따라 양자간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것이다. 다만 본조 5항은, WTO 규범에서 제공하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제도 역시 본조에서 명시된 양자간 조치와 상관없이 양국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⁸⁾

제18조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양국간에 합의한 이행기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¹³⁹⁾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¹⁴⁰⁾ 이러한 양자간 조치는 일-싱가포르 EPA에서 약속한 해당 품목에 대한 양국간 관세제거를 정지하거나, 관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¹⁴¹⁾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해당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해진다. 이러한 조사절차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조사절차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¹⁴²⁾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상대국에 사전협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¹⁴³⁾ 상대국과 보상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협의를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국은 보복조치로서 본 협정에 따른 관세축소를 정지시킬 수 있다.¹⁴⁴⁾

며, 일-멕시코 EPA와 일-칠레 EPA도 동일하다. 다만, 일-싱가포르 EPA와 일-필리핀 EPA는 'Emergency Measures'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138) 김봉철, 『일본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무역구제□□ 30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8. 4, 157면.

139)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1항

140)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제3항 (d)

141)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제1항

142)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제2항

143)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제3항 (c)

144)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제4항

2. 일-멕시코 EPA

일-멕시코 EPA는 제6장에서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제6장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이며, 각조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4> 일-멕시코 EPA 제6장의 구성

제51조	일반규정
제52조	상호존중
제53조	조건
제54조	잠정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55조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절차
제56조	정의

제51조 2항은, 제6장에서 규정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가 WTO 규범과 절차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영향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다.¹⁴⁵⁾ 또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에 대해서 본 조치를 다시 적용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과 동일하거나 1년의 기간 중에서 긴 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¹⁴⁶⁾

일-멕시코 EPA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해진다. 조사절차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상황이더라도 18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¹⁴⁷⁾ 조치를 취하고자 하

145) 일-멕시코 EPA 제53조 제5항

146) 일-멕시코 EPA 제53조 제6항

는 국가는 상대국에 서면을 통해 조사일정과 이유, 관련 품목 등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¹⁴⁸⁾ 또한 상대국은 사전협의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만일 보상협의를 시작한 이후 60일 이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국은 보복조치로서 본 협정에 따른 관세축소를 정지시킬 수 있다.¹⁴⁹⁾

본 협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⁵⁰⁾ 이러한 잠정조치는 200일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같은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기간으로 포함된다.¹⁵¹⁾

3. 일-말레이시아 EPA

본 협정 제22조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항(제23조)을 제외하고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모든 비관세 조치를 당사국이 적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본 협정은 제23조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제외하고, WTO 규범을 존중하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⁵²⁾

제23조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상의 관세율 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의 할당량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⁵³⁾ 본조에 따른 조치는 반드시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1년 이내에 본 조사

147) 일-멕시코 EPA 제55조 제2항 내지 제3항

148) 일-멕시코 EPA 제53조 7항

149) 일-멕시코 EPA 제53조 제11항

150) 일-멕시코 EPA 제54조 제1항

151) 일-멕시코 EPA 제54조 제3항

152) 김봉철, 앞의 『일본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165면.

153)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2항

가 마무리되어야 한다.¹⁵⁴⁾ 본 협정의 양자간 세이프가드 역시 상대국과 선행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국은 보복조치로서 본 협정에 따른 관세축소를 정지시킬 수 있다.¹⁵⁵⁾ 다만 이러한 보복조치는 최초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없다.¹⁵⁶⁾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4년의 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다.¹⁵⁷⁾ 또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에 대해서 본 조치를 다시 적용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과 동일하거나 1년의 기간 중에서 긴 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¹⁵⁸⁾

일-말레이시아 EPA 역시 일-멕시코 EPA와 마찬가지로 최대 200일 동안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⁵⁹⁾

4. 일-칠레 EPA

일-칠레 EPA 역시 일-멕시코 EPA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조항에 나누어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본 협정 제3장 제2부는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이다. 각조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6> 일-칠레 EPA 제3장 제2부의 구성

제20조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21조	조사절차

154)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3항

155)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5항 (b)

156)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5항 (c)

157)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4항 (d)

158)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4항 (e)

159)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제9항

제22조	조건과 한계
제23조	통보
제24조	협의를 보상
제25조	잠정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26조	기타 규정

본 협정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다.¹⁶⁰⁾ 또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에 대해서 본 조치를 다시 적용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과 동일하거나 1년의 기간 중에서 긴 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¹⁶¹⁾

일-칠레 EPA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해진다. 조사절차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¹⁶²⁾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상대국에 서면을 통해 조사 일정과 이유, 관련 품목 등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또한 상대국은 사전협의를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만일 보상협의를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국은 보복조치로서 본 협정에 따른 관세축소를 정지시킬 수 있다.¹⁶³⁾

일-칠레 EPA 제25조는 잠정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 협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는 200일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같은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기간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160) 일-칠레 EPA 제22조 (a)

161) 일-칠레 EPA 제22조 (c)

162) 일-칠레 EPA 제21조

163) 일-칠레 EPA 제24조

해당국은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을 통해 잠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협이는 잠정조치가 취해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¹⁶⁴⁾

양국은 본 협정의 발효 후 10년이 지나서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 5 절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논점별 비교 분석

아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FTA 규정들을 논점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공통점 및 특수성을 도출한다.

1. 세이프가드의 종류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지역 FTA는 당사국의 양자간 세이프가드와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함께 인정하고 있다. 다자간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WTO 규범이 마련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짧은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각 FTA 당사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중국 FTA의 대부분이 양자간 세이프가드와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PTA와 중-홍콩/마카오 CEPA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FTA 역시 일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EFTA FTA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WTO를 존중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

164) 일-칠레 EPA 제25조

석할 수 있다. 또한 한-칠레 FTA는 농산물에 관한 특별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일반 상품에 적용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모든 EPA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해서 WTO 규범을 존중하는 규범을 두면서, 개별적인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

동북아시아지역 FTA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예외가 있는데, 중-ASEAN FTA와 한-ASEAN FTA가 바로 그것이다. 두 FTA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에서 이러한 예외적 특혜규정을 적용한다.

중-ASEAN FTA 제9조와 한-ASEAN FTA 제9조는 모두 3%의 기준을 통하여,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전체 당사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규정한 한-ASEAN FTA 제9조 7항의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An ASEAN-Korea FTA safeguard measure shall not be applied against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o long as its share of imports of the good concerned in the importing Party does not exceed 3% of the total imports from the Parties.”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ASEAN과의 FTA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ASEAN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EPA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발견할 수 없다.

3.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

많은 동북아시아 FTA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칠레 EPA 제20조와 한-싱가포르 FTA 제6.4조가 그러하다.

그러나 중-ASEAN FTA와 한-ASEAN FTA는 약간 다른 형태로 이러한 요건을 묘사하고 있다. 위 두 FTA 제9조 3항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관세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의 효과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과 당사국들에 의한 의무 이행의 결과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한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a Party shall be free to take safeguard measures if as an effec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that Party or if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of the effects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that Party imports of any particular product from the other Parties increase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 so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importing Part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따라서 당사국들의 협정상 의무이행에 의한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당사국의 의무이행으로 수입이 증가된 물량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큰 피해(또는 그러한 우려)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이 ‘예상할 수 없게 발전된 상황’이어야 한다.

4. 피해의 원인

APTA와 중-ASEAN FTA는 피해의 원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입의 증가가 단순히 피해의 한 원인(cause)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APTA 제17조의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If ... imports of a particular product ... are increasing in such a manner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importing Participating State, ...”

그러나 중국의 다른 FTA를 포함하여, 많은 수의 동북아시아 지역 FTA는 수입증가가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의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latter Country ...”

이와 같이 실질적 원인의 요건을 규정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FTA와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6> 피해의 ‘실질적 원인’을 요건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FTA와 관련조항들

한-미 FTA	제10.1조
한-EFTA FTA	제2.11조 1항
한-싱가포르 FTA	제6.4조 1항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3항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2항
중-칠레 FTA	제44조 1항
일-필리핀 EPA	제22조 1항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1항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 1항
일-칠레 EPA	제20조 1항
일-멕시코 EPA	제53조 1항

특이할만한 사항은, 중-ASEAN FTA와 다르게 한-ASEAN FTA는 수입증가가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다른 EPA들과는 다르게 일-태국 EPA는 제22조에서 APTA와 비슷한 단순한 원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5. 피해의 기준

피해의 기준에 관한 논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모든 FTA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해야 한다는 첫 번째 규정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EPA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EP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동종 또는 경쟁상품’이라는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일-필리핀 EPA 제22조의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해석에 따라서, 일본의 EPA는 ‘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EPA는 해당 물품 또는 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피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또는 그러한 우려)만 발생하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FTA가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정지하거나 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계를 두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량제한이나 쿼터 등의 방식은 대부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멕시코 EPA 제53조 3항은 관세조치로 구성된 위의 일반적인 방법들에 관세율 쿼터(tariff rate quotas)라는 방식을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로 추가하였다. 이에 관한 영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consist of tariff measures, including application tariff rate quotas.”

또한 한-미 FTA와 중-파키스탄 FTA는 계절별 관세(seasonal basis customs duty)도 허용한다. 즉 계절별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일 직전의 계절에 상응하는 실행관세율과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계절에 상응하는 실행관세율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허용한다.¹⁶⁵⁾

반면에 중-홍콩/마카오 CEPA의 경우는, 세이프가드의 적용방법으로 단순히 협정상 양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만을 규정하였다.

165) 한-미 FTA 제10.1조

7.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서, 동북아시아 FTA 들의 규정내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의 분류에 해당하는 FTA들은, 한-EFTA FTA 제2.11조와 같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necessary to prevent injury)의 기간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면서 특정기간의 구체적인 한계도 함께 명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WTO 규범의 규정과 유사하다. 한-싱가포르 FTA 역시 이와 동일한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2년의 한계와 다시 2년의 연장한계를 설정하였다.

일본의 많은 EPA가 위와 같은 형태로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을 규정한다. 일-인도네시아 EPA 제24조 4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기간이 4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양자간 세이프가드가 연장될 수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세이프가드 전체의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일-싱가포르 EPA를 제외한 모든 EPA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각 EPA마다 구체적인 기간에서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FTA는 다음과 같다.

<표 8>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에 관한 동북아시아 FTA의 분류 1

한-EFTA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1년 및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제2.11조 5항
------------	-----------------	----------------------	-----------

제 3 장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과 비교

한-싱가포르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2년 및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제6.4조 4항
일-태국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및 2년의 연장기간 (총 5년)	제22조 3(d)항
일-필리핀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4년	제22조 5(e)항
일-말레이시아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4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5년	제23조 4(d)항
일-칠레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4년	제22조
일-멕시코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4년	제53조 5항
일-인도네시아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4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5년	제24조 4(d)항
일-브루나이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하여 총 4년	제21조 4(d)항

두 번째의 분류에 해당하는 FTA들은, 위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FTA의 규정방식에 더하여 이행기간(transitional period) 또는 과도기간의 한계를 추가한다. 일본의 EPA 중에서 유일하게 일-싱가포르 EPA만이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 일-싱가포르 EPA 제44조와 중-칠레 FTA 제45조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칠레 FTA는 제50조에서 이행기간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본조에 따르면, 이행기간이란 본 협정의 발효후 3년이 경과하는 것이며, 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기간이 5년 이상이 요구되는 품목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속서 1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본다. 이행기간 또는 과도기간의 설정은 각 FTA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협정의 발효 후 3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한-미 FTA는 10년을 그 기간으로 한다.¹⁶⁶⁾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FTA는 다음과 같다.

<표 8>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에 관한 동북아시아 FTA의 분류 2

한-미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2년 및 1년 연장가능	이행 기간	제10.2조 5항
한-ASEAN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3년 및 1년 연장가능	이행 기간	제9조 5항
중-파키스탄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2년 및 특별한 경우 1년 연장을 포함한 총 3년	이행 기간	제27조 3(g)항
중-칠레 FT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1년 및 1년 연장가능	이행 기간	제45조 1항
일-싱가포르 EPA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간	1년 또는 특별한 경우 연장을 포함한 총 3년	이행 기간	제18조 1항 및 3(d)항

세 번째의 분류에 해당하는 FTA는 중-ASEAN FTA가 대표적이다. 본 협정 제9조는,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원칙규정이 없으며 해당품목의 관세축소 및 철폐 후 5년이 경과하는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3년의 한계를 두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명시하면서, 1년의 연장기간까지 허용하였다.

166) 한-미 FTA 제10.2조 및 제10.6조.

<표 9>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에 관한 동북아시아 FTA의 분류 3

중-ASEAN FTA	3년 및 1년 연장가능	이행기간(관세축소 및 철폐 후 5년)	제9조 5항
----------------	-----------------	----------------------	-----------

APTA는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8. 당사국간 협의의 절차

협회의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관해서,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FTA는 최종결정 이전에 사전 협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과정에서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멕시코 EPA는 이러한 방식을 몇 개의 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한다. 본 협정 제55조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절차’라는 제목으로 조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본 협정 제54조에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정 조치절차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4조와 유사하는 점이다. 일본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EPA 모두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FTA 역시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제 10.3조는 FTA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관련 조항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된 일-멕시코 EPA와 다른 모습이다. 중-칠레 FTA 역시 한국의 FTA와 비슷한 입장이다.¹⁶⁷⁾

중-파키스탄 FTA와 일본의 몇몇 EPA는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PTA 역시 이와 같다.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3항과 일-싱가포르 EPA 제18조 3(c)항은 사전 협의와 조사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¹⁶⁸⁾ 중-ASEAN FTA는 이 논점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

167) 중-칠레 FTA 제47조.

168) 일-인도네시아 EPA 제24조 3항과 4(c)항, 일-브루나이 EPA 제21조 3항과 4(c)도

하지 않는다.

9. 보상의 형태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한국의 FTA와 일본의 EPA 일부가 NAFTA 또는 EC-멕시코 협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다.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수입국이 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수출국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국 사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 FTA 제10.4조와 일-싱가포르 EPA 제18조가 이러한 형태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APTA 역시 위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양허의 정지’라는 제목의 본 협정 제17조는, 90일 이내에 당사국 사이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설위원회가 상호 수급할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또한 90일 이내에 본 위원회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허의 정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보복조치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시적인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중-파키스탄 FTA는 WTO 규범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⁶⁹⁾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수입국은 다른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양허 조치를 통해 수출국에 보상해야 하고, 보상수준에 대해 당사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수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기간을 18개월

동일하다.

169) 중-파키스탄 FTA 제27조.

로 명시하여 3년으로 규정한 WTO 규범과 차이가 있다. 중-칠레 FTA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

일본이 체결한 세 개의 EPA도 중-파키스탄 FTA와 같은 형태이며, 그 기간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태국 EPA 제22조는 2년, 일-필리핀 EPA 제22조는 12개월 그리고 일-말레이시아 EPA 제23조는 18개월을 그 기간으로 부여한다.

제 4 장 FTA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제 1 절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1.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WTO 규정

위에서 살펴본 일반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가능한 세이프가드제도가 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농산물 수입의 예상하지 못한 급증으로 인해 수입국의 농산물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수입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후적인 무역구제조치의 하나이며, WTO 규범체계에서도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와 별도로 농업협정(WTO Agriculture Agreement)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농산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일정한 발동요건만 충족되면 상대국과의 협의나 피해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WTO 농업협정 제5조는, 농업분야에서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다. WTO 농업협정 제5조는 본 협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간주되며, 본조에 명시된 상황에 대해서만 그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본조에 따른 조치는 특별 관세부과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제한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¹⁷⁰⁾

170) WTO 농업협정 제5조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의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사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조의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하거나 세계 시장가격이 정도 이상 하락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추가적인 관세부과만을 허용하므로, 수입물량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이재욱, □□WTO 농업

WTO 농업협정의 농산물 셰이프가드 적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⁷¹⁾ 첫째,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해당품목의 시장접근 기회의 수준에 따라서 100% 내지 125% 수준)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 실행관세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수입가격¹⁷²⁾이 1986-1988년의 평균 국내가격보다 10% 이상 인하될 경우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농산물 셰이프가드조치는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⁷³⁾ 즉, 농산물 셰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WTO 회원국은 조치를 이행한 후 10일 이내에 WTO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밖에, WTO 농업협정 제5조는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2. FTA와 농산물의 민감성

많은 FTA에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거나 체결국 사이에 양허된 품목에서 농산물의 일부분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특별취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각국이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정치 및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FTA 체결이 국내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소득재분배효과와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불가피하다. 결국 FTA 체결과 비준, 국내효력 발생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FTA에서 민감한 분야를 예외로 하는 경우에 FTA의 경제적효

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59면].

171) WTO 농업협정 제5조 1항.

172) 수입가격에는 해당 농산물의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173) WTO 농업협정 제5조 7항.

과(후생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외나 특별취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¹⁷⁴⁾ 이러한 분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업분야와 농산물에 관한 것이다.

농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체결국들이 주로 취하는 방식은 우선 양허대상 품목에서 민감한 농산품목을 제외하는 것이다.¹⁷⁵⁾ 또한 협상과정에서 차선택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허대상에는 포함하되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다.¹⁷⁶⁾ 여기서 특별한 취급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분적인 수입허용조치(수입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관세철폐에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한 유예기간을 10년 혹은 1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FTA 효력 발생 후 관련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¹⁷⁷⁾

이러한 예외설정과 특별취급이 WTO가 인정하는 FTA 규율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GATT 제24조에서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제한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칫 농산물에 대한 예외설정 및 특별취급으로 해당 FTA가 WTO 규정위반의 문제에 연결될 수도 있다. 특히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규정 3항은 이행기간의 한계를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농산물의 관세유예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⁷⁸⁾

174) 최세균·이대섭·주현정,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8면.

175) 한-칠레 FTA에서도 412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6) EU-멕시코 FTA에서 EU는 전체농산물의 약 42% 정도를 특별취급하였다.

177) 미-호주 FTA에서 미국은 양허대상 제외와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로 100여개 농산물에 대해서 예외 또는 특별취급을 하였다.

178)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철폐 유예기간대상이 되는 품

3. FTA와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일반적으로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FTA에서는 위의 예와는 다르게,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¹⁷⁹⁾ 예를 들어,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WTO 농업협정의 규정과 별도로 특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NAFTA의 농업분야 협정문 부속서 제703조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이 있다. 본 조항에 따르면, NAFTA 회원국이 구체적인 품목을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캐나다는 토마토, 양파, 오이, 브로콜리, 딸기 등이 그 대상이고, 멕시코는 돼지고기와, 햄, 감자, 사과, 커피추출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토마토, 양파, 가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 대상이다. 이와 같은 대상품목들은 모두 저율관세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를 설정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면 그만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쿼터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품목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¹⁸⁰⁾

미-호주 FTA에서도 미국은 호주로부터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일부 원예농산물과 쇠고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격기준 농산물 세

목이 전체의 10% 이상이다.

179) 이것은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의 상황과 상대국과의 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농산물에 민감한 사안을 가진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WTO 규범에 비해 특수성을 인정받는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제도를 FTA에서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180) 서진교·박지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6면.

이프가드 조치를 설정하였다. 원예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양파, 마늘, 토마토, 배, 복숭아, 오렌지주스 등이다. 이들 품목의 실제 수입가격이 설정된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할 때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추가관세율은 WTO의 MFN 관세율과 FTA 이행에 따른 관세차이의 30%에서 최대 100%까지로 다양하다.¹⁸¹⁾ 그러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 세이프가드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이프가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FTA 이행 9차 연도에서 18차 연도까지는 수입물량기준의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실제수입량이 설정된 TRQ 물량을 110% 이상 초과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관세의 크기는 FTA 이행에 따른 당해 연도 관세와 WTO MFN 관세 사이의 차이에 75%로 제한된다. 가격기준 세이프가드는 물량기준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이행 19년차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추가관세의 크기는 MFN 관세의 65%로 제한된다.¹⁸²⁾

제 2 절 동북아시아 3국의 농업관계와 세이프가드 적용사례 비교

1. 동북아시아 3국의 농업구조와 민감성

동북아시아 3국의 농업구조와 민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농산물 분야에서 각국이 취할 입장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3국 중에서 중국의 농업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가격경쟁력과 국내산업에서의 비중이 높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약 1억5천480만ha로 국토면적의 16%를 차지하며, 한국과 일본의 경지면적은 각각 182만ha, 469만ha에 불과하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차

181) 위의 책, 44면.

182) 위의 책, 46면.

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각각 18%, 13% 정도이다.¹⁸³⁾

전반적으로 한국은 곡물과 육류, 사료 등을 수입하는 동시에 곡물을 가공한 조제품과 담배, 인삼 등을 수출한다.¹⁸⁴⁾ 중국은 육류 및 어류에서부터 채소 및 과일 등을 주로 수출하며, 인삼, 종자, 곡물, 사료 등을 주로 수입하면서 꾸준히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¹⁸⁵⁾ 일본의 농산물 무역은 한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주로 육류, 곡물, 인삼 및 담배 등을 수입하면서, 육류 가공품과 담배, 곡물 조제품 등을 수출한다.¹⁸⁶⁾ 3개국 사이의 농산물 수출입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2005년 2억3천4백만 달러인 반면에,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같은 해 19억9천8백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2005년 9억1천7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한 반면, 일본으로부터 같은 해 2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 무역적자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2005년 65억9천1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같은 해 1억6천8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그 폭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3국 사이의 무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무역규모는 감소하였다.¹⁸⁷⁾ 또한 중국의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중국 농산물이 한국과 일본에 상당부분 수출되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단순한 식량작물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채소와 과일류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⁸⁸⁾

183) 최세균·이대섭·주현정, 앞의 책, 52면. 각국의 농업지표에 관하여는, 위의 책 52-53면의 도표 4-1을 참고할 것.

184) 2005년 한국의 농산물 총 수입액은 100억6천8백만 달러이고, 총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이다.

185) 2005년 중국의 농산물 총 수입액은 192억9천3백만 달러이고, 총 수출액은 221억1천8백만 달러이다.

186) 2005년 일본의 농산물 총 수입액은 424억2천2백만 달러이고, 총 수출액은 21억7천7백만 달러이다.

187) 최세균·이대섭·주현정, 앞의 책, 80-81면.

2. 동북아시아 3국 사이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사례 - 마늘분쟁과 버섯분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3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관계는 복잡하게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국 사이에는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몇차례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과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2000년 마늘분쟁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2001년 버섯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한-중 마늘분쟁과 중-일 버섯분쟁은 대상품목과 조치, 협상과정, 대응논리 등에서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관련 품목이 마늘과 버섯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중국의 보복조치 대상은 휴대폰과 자동차 등 공산품이라는 점, 취해진 조치가 세이프가드라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유사하다는 점이다.¹⁸⁹⁾ 다만,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중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수입 증가에 따른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서 중국산 마늘에 대해 3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였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등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였다. 양국은 협상을 거쳐,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과 매년 2만톤의 저율관세적용물량수입을 약속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세이프가드적용 이전인 30%로 유지하는 대신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¹⁹⁰⁾ 그러나 2001년 중국은, 한국의 2000

188) 위의 책, 82면.

189) 김홍률, 『중국의세이프가드보복관세에대한 한국과일본의대응비교: 한국의마늘분쟁과일본의버섯분쟁을중심으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8, 82면.

190)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은 2000년에서 총 3만 2천톤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게 되었다.

년 마늘수입 물량이 약속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이 요구한 나머지 마늘수입을 이행하기로 하고 휴대폰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받았다.¹⁹¹⁾

중-일 버섯분쟁은 2001년 버섯을 비롯한 세 가지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본은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높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한-중 마늘분쟁과 유사하게 일본의 세 가지 공산품¹⁹²⁾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일본이 세이프가드 정식조치를 포기하는 대신에 중국은 일본의 자동차 등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 뒤에는 양국사이의 조건이 있었는데, 즉 일본과 중국이 문제가 되었던 세 가지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고 과잉수출을 억제하는 무역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¹⁹³⁾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체제를 정비하였다.¹⁹⁴⁾

마늘분쟁과 버섯분쟁은 동북아시아 3국의 복잡한 수출입관계와 수입의존도에 연관되어 진행된 면이 강하다. 또한 두 분쟁이 한국과 일본의 당시 정치상황과 관련되어 전개되었다는 분석도 있다.¹⁹⁵⁾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의 농산물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였던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비롯된 두 분쟁의 과정에서, 한국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대응과 협상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수용과 양보로 해결한 데 반하여, 일본은 자동차의 수출중단으로 맞서는

191) 김홍률, 앞의 논문, 83면.

192) 휴대폰, 자동차, 에어컨

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세계농업뉴스□□ 17호, 2002. 1, 34면.

1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세계농업뉴스□□ 20호, 2002. 4, 3면.

195) 김홍률, 앞의 논문, 84-88면.

동시에 협상을 준비하였다.

제 3 절 동북아시아 FTA의 농산물 보호노력

1. 동북아시아 FTA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한-칠레 FTA와 한-미 FTA를 제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FTA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과 수출국인 칠레 또는 미국이, FTA 협상의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관하여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칠레 FTA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를 상대로 한 중국의 FTA 또는 일본의 EPA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ASEAN을 상대로 한중일 3국의 FTA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의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칠레 FTA는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 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의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관세 및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⁹⁶⁾ 농산물에 대한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의 농업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만든 규정이다.

한-칠레 FTA에 명시된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특별 세이프가드가 가지는 특징은, 원칙적으로 발동기간의 제한이 없고, 120일 동안 잠정조치를 발동한다는 점 등이다.¹⁹⁷⁾ 이밖에 WTO의 다자간 세이프가드가

196) 한-칠레 FTA 제3.12조

197) 김봉철, 『한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과 한·EU FTA에 대한 영향』, □□무

사전협의를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로써 의무적인 사전협의를 필요하고 절대적 수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본 협정의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상협의를 하고 수출국의 보복조치는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으로 이루어진다. 이행기간 동안 관세제거에 따른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이프가드 역시 협정상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⁹⁸⁾ 이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칠레 FTA 외에도, 한-미 FTA 제3.3조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조 1항은 어느 해 상품의 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본 규정의 농산물세이프가드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메밀, 인삼, 참기름, 설탕 등이다.¹⁹⁹⁾ 예를 들어, 쇠고기는 FTA 발효 첫해에 27만톤 이상 한국에 수입되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물량기준은 해마다 늘어나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수록 물량기준도 늘어나게 되어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성도 줄어든다.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에 따른 관세율은 MFN 실행관세율 또는 FTA에 의한 관세율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²⁰⁰⁾ 또한 본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 제10장의 일반적인 세

역구제□□ 28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0, 23면.

198) 한-칠레 FTA 제6.1조

199)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 자료, 2007. 4. 2, 2면.

200) 한-미 FTA 제3.3조 2항.

이프가드 조치 또는 WTO의 세이프가드조치와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적용하지 못한다.²⁰¹⁾

2.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이외의 국내 농업 보호노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 분야를 FTA 체제 내에서 취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칠레 FTA와 한-미 FTA를 예로 분석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규정은 또다른 농산물 관련 국내산업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농업경쟁력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FTA 체결에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특별취급이나 예외 설정에 되도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한국은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한 FTA에서 민감한 농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거나 특별취급을 요구한다. 물론 한-칠레 FTA와 한-미 FTA를 제외한 다른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WTO 규정을 존중한다는 원칙규정을 통해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EPA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WTO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EPA에 나타난 자국 농산물 보호방법은 주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의 설정이나 특별취급을 중점적으로 상대방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201) 한-미 FTA 제3.3조 3항.

제 5 장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과 국내법의 대응방향

제 1 절 한중일 FTA의 체결가능성

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동북아시아 지역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중국의 급성장으로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의 장기 불황,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생겼고, 중국은 개방에 따른 발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추세와 지역주의의 확산 현상은 동북아시아에도 FTA 논의를 낳았다.

최근 들어서 한·중·일 3국 사이에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동북아시아 FTA 추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동북아시아 3국이 경제통합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며, EU와 NAFTA 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국 사이의 무역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지닌 경쟁력에 의해서 특정 상품이나 부문에 특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유통과 관리의 지역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병이나 협력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생산과정에서 국제적 분업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EU지역의 역내무역 비율이 60%가 넘고 NAFTA가

47%, ASEAN도 22%에 이르는 데 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20% 정도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분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내수출은 13%에 지나지 않지만 역내수입은 30%에 이른다. 3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역외국인 미국인 반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저부가가치 상품을 상당량 수입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미국 등과의 무역흑자로 메우는 양상을 보이며 불균형적인 분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²⁰²⁾

따라서 동북아 FTA가 체결되면 역내의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의 생산과 공정과정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 비해 임금이 싸고 생산기술이 낮은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더욱 큰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국가 사이의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역내외의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며, 경쟁이 촉진되어 FTA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범위를 넓혀보면, 동북아 FTA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의 생산과 무역은 크게 EU, NAFTA, 그리고 한·중·일 3개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1998년 세계 총생산의 약 31%를 NAFTA, 28%를 EU, 20%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하였고, 무역의 약 36%는 EU, 21%는 동아시아, 20%는 NAFTA 지역에서 이루어졌다.²⁰³⁾

그런데 동아시아는 EU와 NAFTA에 비교될 만큼의 경제적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2) 노재봉, 『동북아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외교□□ 63호, 한국외교협회, 2002, 14면.

203) Robert A. Pastor, *Toward a North American Communit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2001, pp. 20~22.

따라서 동북아 FTA가 동남아시아의 AFTA와 연계된다면,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체가 보다 큰 지역협력체의 형태로 발전하여 국제경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경제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동아시아지역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⁰⁴⁾ 따라서 동북아시아 자체의 지역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동북아 FTA가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²⁰⁵⁾

2. 전망과 과제

동북아 FTA 추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FTA에 중국이 포함되는 등 양국간 FTA 체결 이후 나머지 국가가 참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2개국 이 FTA를 각각 체결하고 이 협정들을 조율하여 동북아FTA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개국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주의의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북아시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은 FTA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자원 및 저임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자본력과 첨단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간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나, 이러한 중간적 위치를 통하여 동북아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에 촉매제로 작용하거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동북아 FTA는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큰 지역주의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ASEAN+3

204) 박희정·이현훈,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향과 한국의 선택』, □□국제지역연구□□ 7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 2003, 269면.

205)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265면.

에 관한 가능성이나, ASEAN과 각각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또는 EPA의 중요성, 특히 중국의 지역주의 기본정책이 화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큰 동북아시아 지역의 FTA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은 양자의 통합가능성을 매우 높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일 FTA의 체결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가 있다.²⁰⁶⁾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는 장애요소가 많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FTA 추진에 호의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문제와 국민감정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동북아 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고민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FTA인 NA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북아 FTA의 추진은,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현재까지는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²⁰⁷⁾

3. 무역규범의 조화

동북아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의 국내법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동북아시아 법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법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²⁰⁸⁾

206) Fukunari Kimura and Mitsuyo Ando, 『Obstacles and Variables of Northeast Asian FTA(s): Economic Obstacles』, The KIEP-NAEAK International Conference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 December 2006, p. 11.

207) 김동훈·김봉철·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106-107면.

208) 김봉철, 앞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268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소수의 규정이나 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양국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를 같이하므로 양국 법제의 동질성과 상호접근은 불가피한 것이다.²⁰⁹⁾ 중국의 법체계는 개방경제와 WTO 가입으로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법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함을 비교·검토하여 그 통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법률용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이나 영미법계 법체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동북아시아 법체계의 정립은 가능성이 충분하다.²¹⁰⁾

동북아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국의 무역규범들의 조화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우선,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반덤핑규범은 원칙적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과도기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개선하여 조사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같은 WTO 다자간 협상에 따라서 그 내용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규범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쟁력과 국내정서를 고려하면, 농업보조금

209) 이균성, 『기업의 구조조정과 주식회사법제의 개혁』,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현안과 과제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7면.

210) 이영준·김동훈·박영복·양창수·이상욱, 『‘동북아시아 매대법의 통일’ 좌담회』,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8면.

의 허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WTO 규범의 수준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하여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법에 의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FTA의 실체규정보다는 당사국의 국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역외적용의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의, 정보교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국의 경쟁법상 보호수준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²¹¹⁾

제 2 절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

1. 일반적인 규정의 구성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FTA가 WTO 규범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FTA가 WTO 규범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당사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국 사이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이다.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의 문제는 3국의 상황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일부 FTA가 당사국간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한중일 FTA에서는 FTA 특유의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211) 강문성·박순찬·송유철·윤미경·이근,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참고.

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일 3국이 모두 WTO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규범은 그대로 존중하는 규정이 한중일 FTA에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본 FTA의 당사국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세밀한 규정과, WTO 회원국 자격으로 WTO 규범에 따라 취해지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존중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크게 나누어질 것이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한중일 FTA로 인한 제3국과의 불필요한 무역마찰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 적용시 본 FTA의 당사국을 특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선언규정을 두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무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규정은, 보상의 기준과 협의절차, 적용을 위한 요건과 한계,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나아가 보복조치에 대한 기준이나 활용가능성 및 그 한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FTA가 세이프가드에 관한 FTA 차원의 독립적인 특별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중일 3국의 FTA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 또는 실효성도 크지 않다.

2. 논점별 규정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FTA 세이프가드의 각 논점별 규정 방식을 종합하여 한중일 FTA의 규정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이프가드의 종류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지역 FTA가 협정체결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세밀하게 규정하면서, 다자간 세이프가드에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과의 형평성을 존중하면서 WTO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수준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FTA가 3국이 체결하는 다자적 성격의 FTA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적 세이프가드의 규정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홍콩 또는 마카오의 관계, 한국의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한 지역 세이프가드의 적용필요성이 적지 않다.

(2) 개발도상국 또는 소규모 국가를 위한 특별규정

소규모 수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는 중국과 한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수입물량의 3%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한중일 FTA에 규정한다면, 3%의 기준이 적당할 것이다.

(3)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 요건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요건을 결정하는 규정에서,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FTA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각국이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FTA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4) 피해의 원인

이와는 반대로,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면 동북아시아 지역 FTA가 대부분 피해에 대한 원인을 찾는 요건에서 FTA 적용에 의한 수입증가가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 FTA가 상대방과의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FTA 적용에 의한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중일 FTA에서도 본 요건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수입과 피해를 연결하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피해의 기준

피해의 기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한중일 FTA에서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비록 일본의 EPA들이 ‘동종 또는 경쟁상품’에 대한 피해라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중일 FTA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한중일 FTA에서, 수입의 증가로 ‘어떠한 분야이든 상관없이 당사국의 국내경제에 피해’만 발생하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면서, ‘심각한 피해의 우려’(threat of serious injury)를 삽입하여 국내산업의 위험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세이프가드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서 피해의 기준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가 야기된 수입’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6) 세이프가드의 적용 형식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FTA가 세이프가드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방식으로, FTA 특혜관세인하 또는 협정상상의 의무이행을 정지하거나 변경하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의 인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각 FTA가 일정한 한계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량제한조치나 쿼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중일 FTA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를 조정하는 방법(관세인하의 정지 또는 변경)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의 인상을 조치의 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적용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 등이 한계의 예가 될 것이다.

(7)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과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적인 기준으로, 피해를 구제(remedy)하거나 예방(prevent)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as long as necessary)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기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며,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 FTA는 주로 1년부터 5년 사이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8년을 그 한계로 설정한 WTO 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FTA들이 이행기간 또는 과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거하거나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기간으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를 설정한다.

협상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될 사항이지만, 한중일 FTA에서는 약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세이프가드 적용의 한계로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4-5년 이상의 이행기간을 두고, 이후에 세이프가드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회를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당사국간 협의의 절차

한중일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국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3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조사과정 이전에서도 당사국 사이의 협의를 인정하는 것도 분쟁을 최대한 피하면서 안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사국간의 보상 등에 관한 협의는 조사 등의 절차진행과 상관없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국의 관계를 감안하면, 해당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잠정조치 역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국 사이의 협의가능성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9) 보상의 형태

세이프가드에 따른 보상의 형태에 관하여, 거의 대부분의 동북아시아 FTA들이 조치를 취하는 수입국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출국 상대방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보상을 규정한다. 더 나아가 수출국이 보복조치로서 상대방에 대한 양허된 FTA 특혜관세의 인하를 정지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이 두 방식을 한중일 FTA에서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국은, 첫 번째 방법인 당사국 사이에 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당사국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서로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여 수출국이 두 번째 방법을 보복조치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복조치의 한계를 세이프가드 조치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safeguard measures)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 동북아시아 FTA는 위의 두가지 방법에 더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조치로서 FTA 양허의 정지를 실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하여 WTO 규범이 3년을 그 기준을 설정한데 반하여 일반적으로 FTA들이 2년을 넘지 않고 있다. 한중일 FTA에서도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절 한중일 FTA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가능성

1. 한중일 농업분야의 과제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해서 판단할 농업분야의 과제는 앞에서 언급된 각국의 농업현황과 3국간의 농업관계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농업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주요 수출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과거의 단순한 곡물류에서 채소 또는 과실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도출된 바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농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토지절약형, 자본 및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농업구조는 현재의 상호보완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²¹²⁾ 따라서 한중일 FTA의 체결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이러한 장기적 변화를 예상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가 시장개방의 예외를 최소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3국이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면, 한중일 FTA의 전제가 되는 농업분야의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협력의 기초방안은, 표준 및 규격의 조화, 식품안전 시스템구축, 국가별 보완관계의 발전, 농업협력사업의 강화, 공동농업정책구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²¹³⁾

2. 농산물에 대한 특별취급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가능성

한중일 농업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우선, 농산물 분야에서 각국의 입장이 반영된 양허대상의 예외설정이나 특별취급이 명시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는 농산물에 관해서 장기간의 관세철폐 예외기간 설정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은 마늘과 버섯 등 농산물에 관하여 이미 몇 차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

212) 최세균·이대섭·주현정, 앞의 책, 119면.

213) 위의 책, 120-125면.

상과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된 경우가 많다. 또한 농산물의 가공품에 관해서는 일반 농산물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농산품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농산물 자체의 문제와 함께, 검역과 위생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앞서 언급된 국내시장보호와는 다른 차원에서 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하여 한중일 FTA에서 확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조치의 대상이 될 만한 품목의 결정에서부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에서는, 우선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한 일반적인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규정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여, 이 규정에 더한 내용을 보강할 것이냐의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¹⁴⁾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법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4 절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하는 국내 세이프가드 규정의 개선방향

1.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국내법적 과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FTA 추진으로 한국은 벌써 다섯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한국산 물품에 대해 특혜적인 취급을 하는 국가도 많이 늘었다.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무역현실에서, 비관세 무역구제제도 특히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지는 산업보호의 기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214)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한 경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체결한 FTA에서, WTO 규범을 넘어선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FTA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규범과는 다른 상대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규범이다. 이러한 이유로 FTA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면, 보다 이로운 규범정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중일 FTA가 가지는 규범적 영향,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제구조 등이 분석되어 보다 알찬 규범정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련하여 한국의 FTA들에 나타난 특징들과 상대국의 입장을 토대로 협상을 준비하면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규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이후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여러 협상에서 국내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과 그것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칠레 FTA에서 나타난 농산물 등에 관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은, 국내 산업보호라는 FTA 정책의 과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WTO 체계의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FTA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몇 가지의 예외와 조건을 두었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한국의 FTA 세이프가드 규정들은 공통적으로 양자간 세이프가드와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절한 조화를 규정하였다.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율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FTA는 2년 내지 3년의 최대적용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의 7년이나 한-미 FTA의 10년과 같은 일정한 과도기간 또는 이행기간을 두어 양자간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둔 것은 향후 자유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한중일 각국의 FTA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므로, 한중일 FTA에서도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들

의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각국의 입장이 논의되고 협상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한중일 3국이 WTO 체계에서도 비교적 세이프가드 제도를 많이 이용해왔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농산물 등 일정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국가가 있다는 점, 각국의 산업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논의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측에서도 개성공단에 관련된 원산지 특혜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며, 동시에 한중일 FTA 추진과 이후의 FTA 정책을 위해서도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국내 법규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FTA 관련 세이프가드 국내법 규정

이미 언급하였던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 등에 산재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련된 국내법 규정들은, 대부분 세이프가드 관련 WTO 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대상 등 WTO 규범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을 위하여 이러한 법규들의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특별조항 또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FTA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국내법 규정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무역법 제28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등 (수입수량규제)- 관세법 제67조의 2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
--

(수입가격규제)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 제 5 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
 - 제 6 조 농산물에 대한 대항조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 6 조 긴급관세조치
 - 제 7 조 잠정긴급관세조치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²¹⁵⁾은 외국과의 FTA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거규정이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하여, 무역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 규율한다.²¹⁶⁾

이밖에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조약과 국제법 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특정국 물품에 대하여 ‘특별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FTA 체결에 따른 특정

215) 본조 신설 2004. 1. 20.

216)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제 6 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국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규제와 수입가격규제를 실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반적인 근거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²¹⁷⁾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항을 둔 것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국내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는 긴급관세조치를, 제 5 조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조치의 법적근거와 규제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법 제 6 조는 국내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칠레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근거규정이다. 본조는, 국내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칠레정부가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칠레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칠레정부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FTA가 다수국과 체결되면서, 보다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된 이후에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관세특별법)’의 제 6 조와 제 7 조는 각각 긴급관세조치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또는 규제 장치로 작용한다.

본법 제 6 조는, 각 FTA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217) 김동훈·김봉철·박찬호, 앞의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163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FTA의 특혜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본법 제 7 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¹⁸⁾

3.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의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와 제 7 조,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모두 FTA 체결에 따라 FTA에 별도로 명시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규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은 앞으로 계속될 FTA 체결상황, 특히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규범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체결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나의 법규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즉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통일된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218) 이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관세법 제65조 등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본법 제6조 2항 및 제7조 2항).

특히 범위를 넓혀서 세이프가드에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를 포함한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련 규범들이 흩어져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세이프가드가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조치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점이지만,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FTA의 반덤핑과 보조금 상계조치까지 아우르는 국내법의 근거규정은 찾을 수 없다.²¹⁹⁾ 한중일 FTA에서 WTO 규범보다 특수한 고유의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를 구비하는 무역구제규정이 마련된다면, 이에 관한 국내법적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이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품을 수출하는 상대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이프가드가 FTA 상대국과 무역갈등을 야기하거나 국내의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피해구제법은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²²⁰⁾

산업피해구제법에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국내 주요담당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219) 물론 한국의 대부분 FTA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해서 WTO 규범을 상당부분 따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몇몇 FTA가 WTO 규범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 고유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220) 이에 관하여 최소한 통상교섭본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같이 관련부처의 협의·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않다. 정부의 FTA 정책대로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FTA 상대국마다 무역구제제도의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달라져 무역구제기관의 업무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²²¹⁾ 즉, 장기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 무역구제법규가 복잡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 사이에도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는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FTA에 따라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역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는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고려가 법적인 뒷받침으로 충분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연구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원활한 무역구제법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산업피해구제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²²²⁾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일 FTA 체결 이후 3국의 무역규범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을 뒷받침할만한 규범마련이 요청된다.

221)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가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2006년 한해에 발효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한-ASEAN 상품무역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게다가 EFTA 및 ASEAN과의 FTA는 구성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협정이 포함되거나 다양한 기준의 부속서가 마련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무역위원회의 업무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22) 김봉철, 앞의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92-96면.

제 6 장 결론 및 요약

FTA 체결의 확산추세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이 지역의 한중일 3개국이 추구하는 FTA 정책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경제적인 의미 외에도 외교적, 정치적인 가치까지 부여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개국이 직접 FTA를 체결하여 무역장벽을 줄여보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3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중일 FTA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세계의 주요 FTA 규정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논점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FTA에 나타난 세이프가드 규정들을 해당 논점별로 정리하여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FTA가 WTO 규범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FTA가 WTO 규범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당사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았다. 이 문제는 당사국간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다. 결국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3국의 상황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국의 입장이 논의되면서 그것이 반영되는 협상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WTO 체계에서도 비교적 세이프가드 제도를 많이 이용해왔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농산물 등 일정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국가가 있다는 점, 각국의 산업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논의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에 관련된 원산지 특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며, 동시에 한중일 FTA 추진과 이후의 FTA 정책을 위해서도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국내 법규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일부 FTA가 당사국간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한중일 FTA에서는 FTA 특유의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이 모두 WTO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규범은 그대로 존중하는 규정이 한중일 FTA에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본 FTA의 당사국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세밀한 규정과, WTO 회원국 자격으로 WTO 규범에 따라 취해지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존중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크게 나누어질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무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규정은, 보상의 기준과 협의절차, 적용을 위한 요건과 한계,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나아가 보복조치에 대한 기준이나 활용가능성 및 그 한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FTA가 세이프가드에 관한 FTA 차원의 독립적인 특별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까지 체결된 한중일 3국의 FTA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중일 FTA에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 논점별로 도출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규정방향은 협상 및 국내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이외에도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법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문자료

- 강문성 · 박순찬 · 송유철 · 윤미경 · 이 근, □□한 · 중 ·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 김동훈 · 김봉철 ·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1) - 브라질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2) - 러시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동훈 · 김봉철 · 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07-17,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_____,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 박변순 · 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서진교 · 박지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참 고 문 헌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을곡출판사, 1995
- _____,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 신용대·서동혁, □□칠레-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 산업연구원, 1999
- 이장규, 이인구, 여지나, 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재욱,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_____,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세균·이대섭·주현정,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한국법제연구원,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1993
- 김도훈,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7. 5
-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 김봉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무역구제□□ 13호, 무역위원회, 2004. 1
- _____,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 _____, 「중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무역구제□□ 26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4
- _____, 「한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과 한·EU FTA에 대한 영향」, □□무역구제□□ 28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0
- _____, 「일본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무역구제□□ 30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8. 4
- 김홍률, 「중국의세이프가드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일본의대응비교: 한국의마늘분쟁과일본의버섯분쟁을중심으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8
- 노재봉, 「동북아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외교』 63호, 한국외교협회, 2002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5
- 박노형, 「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5집,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4
- 박희정·이현훈,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향과 한국의 선택」, 『국제지역연구』 7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 2003
-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13호, 법무부, 1997. 2
- _____,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 이균성, 「기업의 구조조정과 주식회사법제의 개혁」,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현안과 과제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참고문헌

- 이영준 · 김동훈 · 박영복 · 양창수 · 이상욱, 『‘동북아시아 매매법의 통일’ 좌담회』,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42호, 법무부, 2001. 12
- 최경림,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 36호, 법무부, 2000,
- Kaye Scholer · 최진혁,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7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7
-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 자료, 2007. 4. 2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3. 5. 22
- 삼성경제연구소,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 삼성경제연구소,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2002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EFTA FTA 주요 내용 - 기본협정 · 분쟁해결제도협정 · 상품무역협정』, 2007. 4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 4. 3
- 무역위원회, □□Trade Remedy Report□□ 1호, 2002. 3. 1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세계농업뉴스□□ 17호, 2002.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세계농업뉴스□□ 20호, 2002. 4

영문자료

-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 David A. Gantz,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American-Canadian Studies』 Vol. 9, 2000
- Elena Ianchovichina and Terrie Walmsley, 「The impact of China's WTO Accession on East Asi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August 2003
- Ernst-Ulrich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International Law-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London, 1997
- Francis Snyder (Ed.), *Regional and Glob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Hart Publishing, Oxford, 2002
- Fukunari Kimura and Mitsuyo Ando, 「Obstacles and Variables of Northeast Asian FTA(s): Economic Obstacles」, The KIEP-NAEAK International Conference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 December 2006
- Harish Iyer, □□The Bangkok Agreement: Prospects for trade expans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Bulletin on Asia-Pacific Perspectives 2003/04, UN ESCAP, 2003
-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참 고 문 헌

-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 Jeffrey J. Schot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 Summary Assessment」, Policy Brief, No. PB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2007
- 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02.
- Kim, Dong-Hoon ·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
- _____ ,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 Korea and Japan」, 『HUFS Law Review』 Vol. 28,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7. 11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 Lori Yi, Safeguar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 2001
- Mitsuo Matsushita · Thomas J. Schoenbaum · Petros C. Mavroidis, *The*

- World Trade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 Qing Jiang Kong, 「China's WTO Accession and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The Perspective of a Chinese Lawy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December 2004
- Richard Pomfret, *The Economics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 Robert A. Pastor, *Toward a North American Communit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2001
- Roberto V. Fiorentino, Luis Verdeja and Christelle Toquebueuf,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Discussion paper, WTO, 2007
- Won-Mog Cho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1), Oxford University, 2003
- Won-Mog Choi,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Vol. 41 Issue 3),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 Yong-Shik Lee, 「The Beginning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sia and North America? - Forming the Third Largest Free Trade Are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Vol. 41 Issue 5),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WT/REG140/1, 3 December 2002

참 고 문 헌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China*, WT/REG162/1, 20 January 2004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le*, WT/REG169/N/1 and S/C/N/302, 19 April 2004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WT/REG140/5, 30 April 2004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le*, WT/REG169/1, 30 April 2004
- 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COMTD/N/20, 21 December 2004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Mexico*, WT/REG198/1, 9 May 2005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WT/REG210/N/1 and S/C/N/363, 24 February 2006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China*,

- WT/REG162/6, 13 March 2006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China*, WT/REG162/7/Rev.1, 29 June 2006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Malaysia*, WT/REG216/N/1 and S/C/N/371, 13 July 2006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T/REG217/N/1 and S/C/N/373, 28 August 2006
- WTO Decision of 14 December 2006, *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WT/L/671, 18 December 2006
- 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Amendment to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Agreement)*, WT/COMTD/N/22, 27 July 2007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port (2007)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the General Council*, WT/REG/18, 3 December 2007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Chile*, WT/REG234/N/1 and S/C/N/328, 27 August 2007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Factual Presentati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le and China (Goods)*,

참 고 문 헌

- WT/REG230/1, 23 April 2008
-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c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WT/REG237/N/1, 21 January 2008
- WTO Panel Report, *Turke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WT/DS34/R, adopted 31 May 1999
- WTO Panel Report,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WT/DS121/R, adopted 25 June 1999
- WTO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WT/DS121/AB/R, adopted 14 December 1999
- WTO Appellate Body Report, *Turke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WT/DS34/AB/R, adopted 22 October 1999
- WTO Panel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C*, WT/DS166/R, adopted 31 July 2000
-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C*, WT/DS166/AB/R, adopted 22 December 2000
- WTO Panel Report, *U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WT/DS177/R and WT/DS178/R, adopted 21 December 2000.
-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WT/DS177/AB/R and WT/DS178/AB/R, adopted 16 May 2001
- WTO Panel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WT/DS202/R, adopted 29 October 2001

WTO Appellate Body Report,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WT/DS202/AB/R, adopted 15 February 2002

인터넷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9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mode=301&dataKey=11555

http://fta.korea.kr/Inflection/sub_03.jsp

<http://www.doc.gov.lk/regionaltrade.php?mode=inop&link=bangkok>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fulltext.html>

<http://www.tid.gov.hk/english/cepa/details/note.html#INTRODUCTION>

http://www.sice.oas.org/Trade/CHL_CHN/text_e.pdf

<http://english.mofcom.gov.cn/aarticle/subject/cnpkfta/lanmuc/200611/20061103893290.html>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5259

부 록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 동북아시아 지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 한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 중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 일본 EPA의 세이프가드 규정

3. WTO 농업협정 제5조 - 농산물에 관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4.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 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NAFTA
- EC-South Africa TDCA
- EC-Mexico Agreement
- Chile-India PTA
- SAFTA
- Chile-Mexico FTA

NAFTA

CHAPTER EIGHT EMERGENCY ACTION

Article 801

Bilateral Actions

1. Subject to paragraphs 2 through 4 and Annex 801.1, a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ly, if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dut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e good from that Party alone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 is being imported may, to the minimum extent

부 록

necessary to remedy or prevent the injury: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n the good;
- (b) increase the rate of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 (c) in the case of a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that was in effect on the good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to a proceeding that may result in emergency action under paragraph 1:

- (a) a Party shall, without delay, deliver to any Party that may be affected written notice of, and a request for consultations regarding, the institution of a proceeding that could result in emergency action against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b) any such action shall be initiated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institution of the proceeding;
- (c) no action may be maintained
 - (i) for a period exceeding three years, except where the good against which the action is taken i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C+ of the Schedule to Annex 302.2 of the Party taking the action and that Party determines that the affected industry has undertaken adjustment and requires an extension of the period of relief, in which case the period of relief may be extended for one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year provided that the duty appli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relief is substantially reduced at the beginning of the extension period, or
- (ii)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 (d) no action may be taken by a Party against any particular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more than onc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 (e) on the termination of the action, the rate of duty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302.2 for the staged elimination of the tariff, would have been in effect one year after the initiation of the action, and beginning Januar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ction, at the option of the Party that has taken the action
- (i) the rate of duty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rate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302.2, or
 - (ii) the tariff shall be eliminated in equal annual stages ending on the date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302.2 for the elimination of the tariff.
3.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emergency a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to deal with case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would be taken.
4. The Party taking an ac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action. If the Parties concerned are

부 록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ay take tariff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action taken under this Article. The Party taking the tariff action shall apply the action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5.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emergency actions respecting goods covered by Annex 300-B (Textile and Apparel Goods).

Article 802
Global Actions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or any safeguard agreement pursuant thereto except those regarding compensation or retaliation and exclusion from an action to the extent that such rights or obligations are inconsistent with this Article. Any Party taking an emergency action under Article XIX or any such agreement shall exclude imports of a good from each other Party from the action unless:
 - (a) imports from a Party,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 (b) imports from a Party, considered individually,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mports from Parties considered collectively,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mports.
2. In determining whether:
 - (a) imports from a Party,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those imports normally shall not be considered to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if that Party is not among the top five suppliers of the good subject to the

proceeding, measured in terms of import share during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and

- (b) imports from a Party or Parties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consider such factors as the change in the import share of each Party, and the level and change in the level of imports of each Party. In this regard, imports from a Party normally shall not be deemed to contribute importantly to serious injury, or the threat thereof, if the growth rate of imports from a Party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injurious surge in imports occurred is appreciably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total imports from all sources over the same period.

3. A Party taking such action, from which a good from another Party or Parties is initially ex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have the right subsequently to include that good from the other Party or Parties in the ac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a surge in imports of such good from the other Party or Parties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on.

4. A Party shall, without delay, delive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of the institution of a proceeding that may result in emergency action under paragraph 1 or 3.

5. No Party may impose restrictions on a good i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or 3:

- (a) without delivery of prior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and without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with the Party or Parties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proposed to be taken, as far in advance of taking the action as practicable; and

(b)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reducing imports of such good from a Party below the trend of imports of the good from that Party over a recent representative base period with allowance for reasonable growth.

6. The Party taking an ac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Party or Parties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action. If the Parties concerned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ay take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action taken under paragraph 1 or 3.

Article 803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governing all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2. Each Party shall entrust determination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in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to a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subject to review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to the extent provided by domestic law.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modification, except by such review.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empowered under domestic law to conduct such proceeding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it to fulfill its duties.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803.3.
4.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emergency actions taken under Annex 300-B (Textile and Apparel Goods).

Article 804

Dispute Settlement in Emergency Action Matters

No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panel under Article 2008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regarding any proposed emergency action.

Article 805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means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as defined in Annex 805;

contribute importantly means an important cause, but not necessarily the most important cause;

critical circumstances means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domestic industry means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emergency action does not include any emergency action pursuant to a proceeding instituted prior to January 1, 1994;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means an originating good, except that in determining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at good

부 록

originates, the relevant rules of Annex 302.2 shall apply;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of a domestic industry;

surge means a significant increase in imports over the trend for a recent representative base period;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means the 10-year period beginning on January 1, 1994, except where the good against which the action is taken i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C+ of the Schedule to Annex 302.2 of the Party taking the action, in which case the transition period shall be the period of staged tariff elimination for that good.

EC-South Africa TDCA

Article 24

Safeguard clause

1. Where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munity or South Africa, whichever is concerne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o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nexed to the Marr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6.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 Where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outermost regions, the European Union, after having examined alternative solutions, may exceptionally take surveillance or safeguard measures limited to the region(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6.

3. Where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economic situation of one or more of the other Members of 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outh Africa, at the request of the country or countries concerned, and after having examined alternative solutions, may exceptionally take surveillance or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6.

Article 25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exceptional measures of limited duration which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12 and 15 may be taken by South Africa in the form of an increase or reintroduction of customs duties.

2. These measures may only concern infant industries or sectors facing serious difficulties caused by increased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f duties envisaged under Articles 12 and 15, particularly where these difficulties produce major social problems.

부 록

3. Customs duties on imports applicable in South Africa to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introduced by these measures may not exceed the level of the basic duty or the applied MFN rates of duty or 20% ad valorem, whichever is the lower, and shall maintain an element of preference for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The total value of all imports of the products which are subject to these measures may not exceed 10% of total imports of industrial products from the Community during the last year for which statistics are available.
4. These measures shall be appli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four years. They shall cease to apply at the latest on the expiry of the maximum transitional period of 12 years. These time limits may exceptionally be extended by decision of the Cooperation Council.
5. No such measures can be introduced in respect of a product if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elimination of all duti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charges or measures having an equivalent effect concerning that product.
6. South Africa shall notify the Cooperation Council of the exceptional measures it intends to take and, at the request of the Community, consultations shall be held on such measures before they are applied in order to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Its notification shall include an indicative schedule for the introduction and subsequent elimination of the customs duties to be imposed.
7. If no agreement on the proposed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6 has been reached within 30 days of such notification, South Africa may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dy the problem and shall provide

the Cooperation Council with the definite schedule for the elimination of the customs duties introduced under this Article. This schedule shall provide for a phasing out of these duties at equal annual rates starting at the latest one year after their introduction. The Cooperation Council may decide on a different schedule.

Article 26

Safeguard procedures

1. In the event of the Community or South Africa initiating a surveillance mechanism in respect of difficulties referred to in Article 24 which has as its purpose the rapi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trend of trade flows, it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thereof and, if requested,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it.
2. In the cases specified in Article 24, before taking the measure provided for therein or, in cases to which subparagraph 5(b) of this Article apply, the Community or South Africa, as the case may be, shall as soon as possible supply the Cooperation Council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with the view to seeking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3. In the selection of measures, priority must be given to those which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and they shall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4. The safeguard measures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Cooperation Council and shall be the subject of periodic consultations within that body, particularly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timetable for their abolition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5.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ious paragraph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As regards Article 24,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situation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referred for examination to the Cooperation Council, which may take any decision needed to put an end to such difficulties. If the Cooperation Council or the exporting Party has not taken a decision putting an end to the difficulties or no other satisfactory solution has been reached within 30 days of the matter being so referred, the importing Party ma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remedy the problem. Such measures should be take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and shall contain elements which would degressively lead to their elimination at the end of the set period, at the latest.
- (b) Wh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iring immediate action make prior information or examination, as the case may be, impossible, the Community or South Africa, whichever is concerned, may, in the situations specified in Article 24, apply forthwith the precautionary measures necessary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immediately thereof.

Chile-India PTA

Article X

Global Safeguards

1. The Parties shall re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apply safeguard measures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Safeguards Agreement.

Article XI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The Parties can apply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established in the Annex D.

EC-Mexico Agreement (DECISION No 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

Article 15
Safeguard clause

1. Where any product of one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 (a)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or
 - (b) serious disturbances in any sector of the economy or difficulties which could bring about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economic situation of a region of the importing Party, the importing Party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is Article.

2. Safeguard measures shall not exceed what is necessary to remedy the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and should normally consist of the

부 록

suspension of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applicable rate of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Decision for the product concerned or the increase of the rate of duty for that product.

3. Such measures shall contain clear elements progressively leading to their elimination at the end of the set period, at the latest. Measures shall not be taken for a period exceeding one yea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measures may be taken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No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to the import of a product which has previously been subject to such a measure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since the expiry of the measure.
4. The Party intending to take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rticle shall offer the other Party compensation in the form of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liberalisation in relation to the imports from the latter. The offer of liberalisation shall normally consist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concession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safeguard measure.
5. The offer shall be made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simultaneously with the supply of information and referral to the Joint Committee, a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ould the offer not be considered satisfactory by the Party against whose product the safeguard measure is intended to be taken, both Parties may agree, in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on other means of trade compensation.
6. If the Parties concerned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product the safeguard measure is taken may take

compensatory tariff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safeguard measure taken under this Article. The Party taking compensatory tariff action shall apply it, as a maximum, for the period necessary to achieve equivalent trade effects.

7. In the cases specified in this Article, before taking the measures provided for therein or, in the cases to which paragraph 8(b) of this Article applies, as soon as possible, the Community or Mexico, as the case may be, shall supply the Joint Committee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with a view to seeking a solution acceptable to the two Parties.
8.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aragraph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situation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referred for examination to the Joint Committee, which may take any decisions needed to put an end to such difficulties. If the Joint Committee or the exporting Party has not taken a decision putting an end to the difficulties or no other satisfactory solution has been reached within 30 days of the matter being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the importing Party may adopt th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dy the problem, and, in the absence of mutually agreed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product the measure is taken may take compensatory tariff a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uch compensatory tariff action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Joint Committee. In the selection of safeguard measures and compensatory tariff action, priority must be given to those which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e arrangements established in this Decision.
 - (b) Where exceptional and critical circumstances requiring immediate action make prior information or examination, as the case may be,

부 록

impossible, the Party concerned may, in the situati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pply forthwith precautionary measures necessary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immediately thereof.

- (c) The safeguard measures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Joint Committee and shall be the subject of periodic consultations within that body, particularly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timetable for their abolition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 9. In the event of the Community or Mexico subjecting imports of products liable to give rise to the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o an administrative procedure having at its purpose the rapi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trend of trade flows, it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SAFTA

Article 16

Safeguard Measures

- 1. If any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of a concession under this Agreement,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such a manner or in such quantitie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may, pursuant to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this Article, suspend temporarily the concessions gra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ll other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product and a causal relationship must be clearly established between "serious injury" and imports from within the SAARC region, to the exclusion of all such other factors.
2. Such suspension shall only be for such time and to the extent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and in no case, will such suspension be for duration of more than 3 years.
 3. No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by a Contracting State to the import of a product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measure during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by the Contracting States,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at during which such measure had been previously applied, provided that the period of non-application is at least two years.
 4. Al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resorting to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WTO Agreement on Safeguards
 5. Safeguard ac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non-discriminatory and applicable to the product imported from all other Contracting State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this Article.
 6. When safeguard provision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 invoking such measure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exporting Contracting State(s) and the Committee of Experts.
 7.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Contracting State may take a provisional

부 록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is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shall be met.

8. Notwithstanding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afeguard measures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applied against a product originating in a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 as long as its share of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State does not exceed 5 per cent, provided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with less than 5%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not more than 15%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Chile-Mexico FTA

Article 6-02

Bilateral Emergency Actions

1. Subject to paragraphs 2 through 4, a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ly, if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dut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relation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e good from that Party alone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into whose territory the good is being imported ma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remedy or prevent the injury or threat thereof: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n the good;
 - (b) increase the rate of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 (ii) the most favoured natio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to a proceeding that may result in emergency action under paragraph 1:
- (a) a Party shall, without delay, deliver to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the institution of a proceeding that could result in emergency action against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b) any such action shall be initiated no later than one calendar year after the date of institution of the proceeding;
 - (c) no action may be maintained
 - (i) for a period exceeding one year, or
 - (ii)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 (d) no action may be taken by a Party against any particular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ore than onc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 (e) on the termination of the action, the rate of duty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3-04(3) (Tariff Reduction Programme) for the staged elimination of the tariff, would have been in effect one year after the initiation of the action, and beginning Januar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ction, at the option of the Party that has taken the action

부 록

- (i) the rate of duty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rate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3-04(3), or
 - (ii) the tariff shall be eliminated in equal annual stages ending on the date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3-04(3) (Tariff Reduction Programme).
3.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emergency a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to deal with case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4. The Party taking an ac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action.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ay take tariff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action taken under this Article. The Party taking the tariff action shall apply the action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rticle 6-03

Global Emergency Actions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except those regarding compensation or retaliation and exclusion from an action to the extent that such rights or obligations are inconsistent with this Article. Any Party taking an emergency action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shall exclude imports of a good from

the other Party from the action unless:

- (a)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 (b)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otal imports.

2. In determining whether:

- (a)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those imports normally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substantial if that Party is not among the top five suppliers of the good subject to the proceeding, measured in terms of import share during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and
- (b)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consider such factors as the change in the total import share of the other Party, and the level and change in the level of imports of the other Party. Imports from a Party normally shall not be deemed to contribute importantly to serious injury, or the threat thereof, if the growth rate of such imports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injurious surge in imports occurred is appreciably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total imports from all sources over the same period.

3. A Party taking such action, from which a good from the other Party is initially ex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have the right subsequently to include that good in the ac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a surge in imports of such good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on.

4. A Party shall, without delay, delive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the institution of a proceeding that may result in emergency action

under paragraph 1 or 3.

5. Neither Party may impose restrictions on a good i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or 3:
 - (a) without delivery of prior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and without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s far in advance of taking the action as practicable; and
 - (b)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reducing imports of such good from the other Party below the trend of imports of the good over a recent representative base period with allowance for reasonable growth.
6. A Party taking global emergency ac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against good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shall limit that action solely and exclusively to tariff measures.
7. The measures mentioned in paragraph 6 shall consist of increasing the rate of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a)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 (b) the most favoured natio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8. The Party taking an ac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action.
9.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good the action is taken may take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action taken under paragraph 1 or 3.

Article 6-04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governing all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2. Each Party shall entrust determination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in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to a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subject to review by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to the extent provided by domestic law.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modification, except by such review. The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empowered under domestic law to conduct such proceedings shall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it to fulfil its duties.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6-04.

Article 6-05

Dispute Settlement in Emergency Action Matters

Neither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panel under Article 18-06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regarding any emergency action that has simply been proposed.

2. 동북아시아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한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 한-미 FTA

중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 APTA
- China-ASEAN FTA
- China-Hong Kong CEPA
- China-Chile FTA
- China-Pakistan FTA

일본 EPA의 세이프가드 규정

- Japan-Singapore EPA
- Japan-Thailand EPA
- Japan-Chile EPA
- Japan-Mexico EPA
- Japan-Malaysia EPA
- Japan-Indonesia EPA
- Japan-Philippine EPA

한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한-칠레 FTA

제 6 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6.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이 협정 제19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3.12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조항

1. 이 협정 제6장 및 농업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타방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록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이 장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한 더 이상의 관세 인하의 중지, 또는
 - 나.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와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

3.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을 모색할 목적으로 철저한 상황조사를 위해 그 문제를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한다. 타방 당사국의 요청시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후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또는 혼란을 제한하거나 구제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수입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조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발생한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농산물 부문에 부여된 특혜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4항에 따라 취한 일시적 조치가 취해진 기간을 포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하는 해결에 이르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위원회에 통지한 후 이 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양허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 가. “심각한 피해”는 일방 당사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로서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상당하고도 전반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 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요원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싱가포르 FTA

제 6.4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 1.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 나.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

한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 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관세율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되고 이를 준용한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제2항에 규정된 조사를 개시할 때, 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8항에 규정된 보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사전에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당사국이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또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에 즉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어떠한 조치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및 기간은 제외하고, 또는
 - 나.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고 판정하는 때, 기간이 최대 2년간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5.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당사국은 적용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6.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어야 한다.
7.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중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8.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양허의 형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형태로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국 원산지상품이 그 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그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다.

제 6.5 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EFTA FTA

제 2.11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을 조건

으로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취할 수 있다.

2. 긴급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 상의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초래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기술, 제안된 개시일, 예상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제거를 위한 일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4.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 긴급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하여야 한다.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동위원회는 사안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상호 합의된 보상이 없는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의 선택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상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 된다.
8.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

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조치를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의 총 적용기간에 기초한다.

9. 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한-ASEAN FTA

제 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원인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의 의무를 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 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들은 기본협정 하 분쟁해결제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 이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어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완성일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 의하여 관세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의 효과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의무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4.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5.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초 3년간 유지될 수 있고 제6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관정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는 동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5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7.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 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전체 당사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하여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에 따른 보상을 구함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은 동등한 정도의 양허 정지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과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

부 록

당사국 사이의 이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의 주선을 의뢰한다. 그러한 주선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다.

9. 상품에 관한 당사국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면, 동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하였을 부속서 1 및 2에 규정된 당사국의 관세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 계획에 따른 세율이 된다.
10.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적용을 이행하기 이전에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11.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 사이의 또는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로의 공식적 교신 및 서류교환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영어가 사용된다.

한-미 FTA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10.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10.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 다호에 따라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 제2항 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일체의 그러한 조사를 개시 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

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10.3 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

부 록

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로부터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10.2조 제2항 및 제10.2조 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10.2조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10.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10.2조 제5항 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10.4조

보 상

1.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종료된다.

제 10.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10.6 조
정 의

제1절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 함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제10.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작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라 함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말한다.

제 3.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그 상품의 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항 내지 제8항에 합치하게 부속

서 3-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가. 제10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필요한 협정상 의 조치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공동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 무역 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과 운용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부 록

7.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가. 부속서 3-가의 당사국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 나. 그 조치가 부속서 2-나의 자국양허표의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 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8.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농산물은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관세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중국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APTA

Chapter IV

SAFEGUARD MEASURES AND CONSULTATIONS

Article 17

Suspension of Concessions

- (i) If,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mports of a particular product included in th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of a Participating Stat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icipating State or other Participating States, are increasing in such a manner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importing Participating State, the importing Participating State may suspend,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concessions includ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product and shall simultaneously notify the Standing Committee and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to remedy the situation, keeping the Standing Committee duly informed of progress in these consultations.
- (ii) If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cannot be reached within 90 days,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then seek to obtain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through: (a) confirmation of the suspension; or (b) modification of the concession; or (c) its replacement by a concession of equivalent value. If the Standing Committee cannot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within 90 days from that date, the Participating State(s) affected by the suspension shall then be free to temporarily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trade of the Participating State which has taken such ac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subject to notification to and further negotiation for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shall adopt its final decision by at least a two-thirds majority vote within 90 days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ter notification.

- (iii) The pre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the legitimat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shall, as far as possible, b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rticle 18

Balance of Payments Restrictions

- (i)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 Participating State which finds it necessary to introduce restrictions on imports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its balance of payments may do so while endeavouring to safeguard the value of the concessions embodi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If, however, such restrictions are applied by a Participating State in respect of products included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such restrictions shall apply provision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and notice thereof must immediately be given to the Standing Committee with a view to negotiat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19 and 20 of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se consultation procedures, Participating States applying balance of payments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products included in their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shall progressively relax such restrictions as their

balance of payments situation improves and shall eliminate such restrictions when conditions no longer justify their maintenance.

- (ii) The pre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the legitimate application of balance of payments safeguards shall, as far as practicable, be the same as provided under WTO's Understanding on Balance of Payments Provisions of the GATT 1994.

Article 19

Remedy of Trade Disadvantages

If,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ignificant and persistent disadvantages are created in respect of the trade between one Participating State and the others as a whole, those Participating States shall, at the request of the affected Participating State, acc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 or request of the latter,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 remedy such disadvantages through the adoption of suitable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concessions, designed to further expand multilateral trade.

Article 20

Non-Compliance

If a Participating State should consider tha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is not duly complying with any given provision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non-compliance adversely affects its own trade relations with that Participating State, the former may make formal representation to the latter, which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 made to it. If no satisfactory adjustment is effected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cerned within 120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such representation

was made, the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may decide to make to any Participating State such recommendation as it considers appropriate. If the Participating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latter may authorize any Participating State to suspend, in relation to the non-complying State, the application of such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s the Standing Committee considers appropriate.

Article 21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that may arise among Participating Sta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instrument adopted within its framework shall be amicably settl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event of Participating States' failure to settle a dispute among themselves, the dispute will be brought to the Standing Committee to resolve.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review the matter and make a recommendation thereon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was submitted to it.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adopt appropriate rules for this purpose.

China-ASEAN FTA

ARTICLE 9

Safeguard Measures

1. Each Party, which is a WTO member,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2. With regard to ACFTA safeguard measures, a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initiate such a measure on a product within the transition period for that product. The transition period for a product shall begi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end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ariff elimination/reduction for that product.
3. A Party shall be free to take ACFTA safeguard measures if as an effec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that Party, including tariff concessions under the Early Harvest Programme of the Framework Agreement or this Agreement, or, if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of the effects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that Party, including tariff concessions under the Early Harvest Programme of the Framework Agreement or this Agreement, imports of any particular product from the other Parties increase in such quantities, absolute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so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importing Part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4. If an ACFTA safeguard measure is taken, a Party taking such a measure may increase the tariff rate applicable to the product concerned to the WTO MFN tariff rate applied to such product at the time when the measure is taken.
5. Any ACFTA safeguard measure may be maintained for an initial period of up to 3 years and may be extend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Notwithstanding the duration of an ACFTA safeguard measure on a product, such measure shall terminate at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for that product.

부 록

6. In applying ACFTA safeguard measures, the Parties shall adopt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with the exception of the quantitative restriction measures set out in Article 5, and Articles 9, 13 and 14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s such, all other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shall, *mutatis mutandis*, be incorporated in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7. An ACFTA safeguard measure shall not be applied against a product originating in a Party, so long as its share of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in the importing Party does not exceed 3% of the total imports from the Parties.
8. In seek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8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for an ACFTA safeguard measure, the Parties shall seek the good offices of the body referred to in paragraph 12 to determin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concessions prior to any suspension of equivalent concessions. Any proceedings arising from such good offices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CFTA safeguard measure was applied.
9. On a Party's termination of an ACFTA safeguard measure on a product, the tariff rate for that product shall be the rate that, according to that Party's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schedule, as provided in Annex 1 and Annex 2 of this Agreement, would have been in effect commencing on 1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safeguard measure is terminated.
10. All official communications and documentations exchanged among the Parties and to the body referred to in paragraph 12 relating to any

ACFTA safeguard measure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11. When applying ACFTA safeguard measures, a Party shall not have simultaneous recourse to the WTO safeguard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12.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y reference to “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the “Committee on Safeguards” in the incorporated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shall, pen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body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6, refer to the AEM-MOFCOM, or the SEOM-MOFCOM, as appropriate, which shall be replaced by the permanent body once it is established.

China-Hong Kong CEPA

Article 9

Safeguards

If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A" causes sharp increase in the import of a product included in Annex 1 originating from the other side which has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affected side's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affected side may, after giving written notice, temporarily suspend the concessions on the import of the concerned product from the other side, and shall, at the request of the other side, promptly commence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9 of the "CEPA"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China-Chile FTA

Section 1

Bilateral Safeguards

Article 44

Imposi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1.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dut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 product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the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the importing Party may impose a safeguard measure described in paragraph 2,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ly.

2. I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1 are met, a Party may, to the extent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duty on the produc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r
 - (b) increase the rate of duty on the product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or
 - i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⁴

Article 45

Standards for a Definitive Bilateral Safeguard

1. A Party may apply a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for an initial period of one year, with an extension not exceeding one year. Regardless of its duration, such measure shall terminate at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2. Neither Party may impose a safeguard measure more than once on the same product.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in the case of a product for which the transition period is over five years, a Party may impose a safeguard measure for a second time on the same product, provided that a period equal to that of the previously imposed measure has elapsed.
4. Neither Party may impose a safeguard measure on a product that is subject to a measure that the Party ha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neither Party may continue maintaining a safeguard measure on a product that becomes subject to a measure that the Party imposes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5. On the termination of a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duty shall be the duty set out in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1 of this Agreement as if the measure had never been applied.

Article 46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ransparency Requirements

부 록

1. The importing Party may take a safeguard measure under this Section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this end Article 3 of the Safeguards Agreement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In determining whether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product of the other Party have caused serious injury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based on objective evidence, evaluate the effect of the increased imports on the domestic industry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economic factors: the rate and amount of the increase in imports of the originating product, the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taken by the increased imports, changes in the level of sales, production, productivity, capacity utilization, profits and losses, and employment. The list is not exhaustive, nor can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3. When factors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product of the other Party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n import custom du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e simultaneously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e injury caused by other factors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product from the other Party.

Article 47

Provisional Measures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Such a measure should take the form of tariff increase to be promptly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he duration of any such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initial period and any extension of a definitive measure.

Article 48

Notification

1. A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n:
 - (a) initiating an investigation;
 - (b) taking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 (c) making a finding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 (d) taking a decision to impose or extend a definitive measure; and
 - (e) taking a decision to modify a measure previously undertaken.

2. In making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d) and (e) of paragraph 1, the Party applying the measure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all pertinent information, such as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product involved, the proposed measure, the grounds for introducing such a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The notifying Party shall provide a courtesy no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of the notification.

3. A Party applying a provisional or definitive measure or extending a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iews on the measure with the other Party.

Article 49
Compensation

1. Upon the request of the Party whose product is subject to a safeguard measure, the Party taking a safeguard measure shall hold consultations in order to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2.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compensation within 45 days after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exporting Party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to the trade of the Party applying the safeguard measure. The right of suspension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year that a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safeguard measure has been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such a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3.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at least 30 days before suspending concessions under paragraph 2.
4. The oblig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suspend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under paragraph 2 shall terminate on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rticle 50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competent authority means:

- (a) in the case of China, Ministry of Commerce, or its successor; and
- (b) in the case of Chile, the National Commissi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ence of Price Distortions in Imported Products (Comisión Nacional Encargada de Investigar la Existencia de Distorsiones en el Precio de las Mercaderías Importadas), or its successor;

domestic industry means, with respect to an imported product,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or those producers whose collective production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such product;

Safeguard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which is part of the WTO Agreement;

safeguard measure means a safeguard measure described in paragraph 2 of Article 44;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means the three 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xcept in the case of a product where the liberalization process lasts five or more years, the transition period shall be equal to the period in which such a product reaches zero tariff according to the Schedule to Annex 1 of this Agreement.

Section 2

Global Safeguard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rticle 51

Global Safeguard Measures

1. The Parties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50.
2.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s defined in Article 50 shall not be subject to Chapter X of this Agreement.

China-Pakistan FTA

Article 26

Global Safeguard Measures

1. The Parties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2. Actions taken pursuant to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shall not be subject to Chapter X (Dispute Settlement) of this Agreement.

Article 27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a)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means:

- (i) in the case of China, Ministry of Commerce, or its successor; and
 - (ii) in the case of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or its successor;
 - (b) Domestic industry means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those producers whose collective production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such product"
 - (c)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 (d)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 (e) Transition period means "five-year period in the first phase of customs duty reduction or elimination". With regard to transition period in the second phase, the Parties shall meet to determine it in the review of this Article.
2.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ly,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other party's territo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the importing Party may: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부 록

- the time the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 (c)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corresponding season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to an investigation or a measure described in Paragraph 1 (a).
- (a)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 (i) initiating an investigatory process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 (ii) making a finding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and
 - (i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a safeguard measure.
 - (b) in making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ii) and (a)(iii), the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 involved and the proposed measure, proposed date of introduction and expected duration; the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hall also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the other Party considers pertinent;
 - (c)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as far in advance of

taking any such measure as practicable,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exchanging views on the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4. The Parties shall in such consultations, review, inter alia,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b), to determine:

- (i) complianc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 (ii) whether any proposed measure should be taken; and
 - (iii)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posed measure, including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measures;
- (d) a Party shall apply the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4.2(c)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o this end, Articles 3 and 4.2(c)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 (e) in undertaking the investigation described in paragraph (d), a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a) and (b)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o this end, Article 4.2(a) and (b)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es mutandis*
- (f) the investigation shall in all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 (g)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 (i)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ii)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an additional one year, to a total maximum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imposition of the measure i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determine in conformity with procedures set out paragraphs (a) through (g), that the safeguard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 (iii)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regardless of its duration or whether it has been subject to extension;
 - (h)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ake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roduct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at during which such measure had been previously applied, provided that the period of non-application is at least two years;
 - (i)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taken against a particular good while a global safeguard measure in respect of that good is in place; in the event that a glob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in respect of a particular good, any existing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hich is taken against that good shall be terminated;
 - (j) upon the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under this Article, the rate of duty shall be duty set out in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I of this Agreement as if the measure had never been applied; and
 - (k) within 5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eet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ny bilateral safeguard mechanism.
4. The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described in Paragraph 2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in the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3 (c),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s the measure is applied may take action having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measure applied under this Article. This action shall be applied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The right of suspension described in this paragraph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18 months that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such a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5. In applying measures under this Article, each Party shall:
- (a)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governing all safeguard investigation proceedings.
 - (b) entrust determinations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in safeguard investigation proceedings to a competent investigating authority.
 - (c)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safeguard investigation proceedings.

일본 EPA의 세이프가드 규정

Japan-Singapore EPA

Article 17

Non-tariff Measures

Each Party shall:

- (a) not institute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 (b) ensure the transparency of its non-tariff measures permitted under paragraph (a) above and their full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with a view to minimising possible distortion to trad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rticle 18

Emergency Measur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Party may, on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measure set out in this paragraph is taken; and
(i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accorded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vided for in Article 14,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alone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2. A Party may take a measure set out in paragraph 1 abov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same procedures as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The investigation shall in all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stitution.

3.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to the taking of a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i) initiating an investigatory process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ii) making a finding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and

(i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such a measure;

부 록

- (b) in making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the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 involved and the proposed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ntroduction of the measure and its expected duration;
- (c)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exchanging views on the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4 below. The Parties shall, in such consultations, review, inter alia, the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sub-paragraph (b) above, to determine:
 - (i) wheth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have been complied with;
 - (ii) whether any proposed measure should be taken; and
 - (iii) whether any proposed measure would operate so as to constitute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 (d) no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tim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one yea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fter the prior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above, a measure may be maintained for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A Party taking such measure shall present to the other Party a schedule leading to its progressive elimination;
- (e) no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the measur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 (f) upon the termination of the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measure.

4.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above,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measure appli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5.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to a good being imported to that Party irrespective of its source, including such a good being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unless such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6.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and decisions governing proceedings of the measure.
7.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ovid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maintain judicial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the prompt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relating to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

부 록

1 of this Article.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shall be independent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measure in question.

8.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the measure.

Japan-Thailand EPA

Article 21

Non-tariff Measur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not introduce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other Party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ensure the transparency of its non-tariff measures permitted in paragraph 1 above and shall ensure the full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 22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If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is being imported into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 may, a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other Party and to facilitate its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a)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s may be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o this end,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b)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shall,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be completed within 1 year,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3.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to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 (i)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a) above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 (ii) making a finding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nd
 - (i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e Party making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 (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above, the reasons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tariff classification under the Harmonized System and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 (i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ii) and (iii) above,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subject to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its tariff classification under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ts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 (c)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a) above and exchanging views o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d)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period of time shall not exceed 3 year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be extended by up to 2 years,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of this Article are met. The total period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ncluding any extensions thereof, shall not exceed 5 years. In order to facilitate adjust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over 1 year, the Party applying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gressively liberalis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 (e)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r 1 year, whichever is longer.
- (f) Upon the termin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the rate of customs duty for such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as i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had never been applied.

4. (a) A Party applying or extending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an adequate opportunity to consult on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ithout delay and no later than 30 days after such application or extension.

- (b)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a) above,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at Party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only whil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 (c)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above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t least 30 days before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
- (d) The right of suspens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above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2 years that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5.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6.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7. (a)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hich shall take the form of the measure set out in subparagraph 1(a) or (b) abov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 (b)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 (c)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paragraph 2 above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d) above.
 - (d) Subparagraph 3(f) and paragraphs 5 and 6 abov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y additional customs duties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promptly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a) above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8.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3(a), 4(c) and 7(b) above shall be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9.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10.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necessary, after 15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Japan-Chile EPA

Section 2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20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of that Part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is being imported into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2. A Party may, a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provided for in Section 1;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whe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Investigation Procedures

1.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same procedures as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3 and subparagraph 2(c)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2.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 all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3. In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determine whether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under the terms of this Sec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wh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shall evaluate all relevant factors of an objective and quantifiable nature having a bearing on the situation of that domestic industry, in particular, the rate and amount of the increase in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in absolute terms, the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taken by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nd the changes in the level of sales, production, productivity, capacity utilization, profits and losses, and employment.
4. The determination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shall not be made unless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demonstrates, on the basis of objective evidence,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n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When factors other than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re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such injury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rticle 22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a)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tim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three years. Howeve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be extended, provided that the total period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ncluding such extensions, shall not exceed four years;
- (b) in order to facilitate adjust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Party maintaining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gressively liberaliz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 (c)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r one year, whichever is longer;
- (d)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to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 (i)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or
 - (ii)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 (e)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en route from a Party to the other Party at the time when the other Party notifies the former Party of the decision to apply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subparagraph 1(b) of Article 23; and
- (f) upon the termin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i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had never been applied.

Article 23

Notification

1.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 (a) taking a decis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1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and
 - (b) taking a decision to apply, extend or liberaliz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2. The Party making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 (a)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 the reas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peri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 (b)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the proposed date of its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Article 24

Consultations and Compensation

1.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1, exchanging views o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this Article.
2.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3.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fter giving written notice of such suspension,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regarding concessions to be suspended, to the other Party.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only whil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maintained.

Article 25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hich shall take the form of the measure set out in subparagraph 2(a) or (b) of Article 20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2.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3. The duration of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Article 21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22.
4. Subparagraph (f) of Article 22 and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6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customs duty imposed as a result of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1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Article 26

Miscellaneou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3.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3, paragraph 3 of Article 24 and paragraph 2 of Article 25 and any oth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4.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f necessary, after 10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Japan-Mexico EPA

Chapter 6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51

General Provision

1. This Chapter establishes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to originating goods, which shall be applied only between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s may be amended. Except for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no Party shall apply safeguard measures to originating goods which are accorded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utside the scope of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s may be amended.

Article 52

Consistency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governing proceedings of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53

Condition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each Party may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if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which is accorded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2.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consist of tariff measures, including application of tariff rate quotas.
4. Each Party shall not apply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on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up to the limit of quota quantities granted under tariff rate quot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in Annex 1.
5.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for a period exceeding 3 years. Howeve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fter the prior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9 below,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be maintained for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4 years. A Party taking such measure shall present to the

other Party a schedule leading to its progressive elimination.

6.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s of the same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measure or 1 year, whichever is longer.
7.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in English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up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5. Such written notice shall include the reas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involved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8.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in English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uch written notice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evidence of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involved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ts date of entry into force, and its expected duration.
9.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on such measure with a view to, inter alia,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10 below.
10.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offer the other Party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additional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such measure, and, in the case that room for such sufficient additional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is already exhausted through overall reduction of customs duties, other concessions which the Parties may agree upon.

11.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when a Party initiates the applica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other Party shall be free to suspend, to the trade of the Party applying such measure,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5,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such measure applied. For this purpos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12. Upon termin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such measure.
13.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f necessary, after 10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54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2.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in English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ultations on such measure shall take place promptly after such measure is taken.
3.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Articles 52 and 55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such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Article 53.
4. Paragraphs 2 through 4 and 12 of Article 53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customs duty imposed as a result of such measure shall be refunded within 60 days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5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Article 55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Proceeding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edings relating 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2. A Party shall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its investigating author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3.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examine and ensure the existence of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are causing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4. An investigation shall,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be completed within 1 year,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5. Up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give a public notice of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official journal of that Party. The public notice shall identify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period of investigation,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deadlines for filing statements and other documents, and the place at which documents filed during the investigation may be inspected.
6. Each Party shall establish procedure to allow an interested party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submitted by other interested parties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that Party after submission of such inform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upon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provide timely access to the information, including documents, items of evidence, and nonconfidential written summa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below, which were submitted by other interested par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all grant access to the interested parties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 (a) production processes for the good concerned;
 - (b) production costs of the good concerned and specifications of its components;
 - (c) distribution costs of the good concerned;
 - (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of the good concerned;

- (e) selling prices of the good concerned;
- (f) description of the category of individual custom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any other enterprises related to the good concerned;
- (g) data considered for the injury analysis such as the level of sales, production, productivity, capacity utilization, profits and losses, and employment related to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and
- (h) any other information about the enterprise related to the good concerned.

7. Notwithstanding paragraph 6 above,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for the treat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s specified by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which is provid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When the interested parties provide such information, they shall be required to furnish non-confidential written summaries thereof, or if the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 cannot be summarized, the reasons why a summary cannot be provided.
8. During the course of each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endeavor to hold a public hearing after providing reasonable notice, so that opposite views may be presented and rebuttal arguments offered. Such public hearing should allow interested parties to defend their interest and to question the other parties.
9. In the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serious injury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evaluate all relevant factors of an objective and quantifiable nature having a bearing on the situation of that domestic industry, in particular, the rate and amount of the increase in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in

부 록

absolute terms, the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taken by increased imports, and changes in the level of sales, production, productivity, capacity utilization, profits and losses, employment, and prices.

10. The determination that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serious injury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shall not be made unless this investigation demonstrates, on the basis of objective evidence,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n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When factors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such injury shall not be attributed to increased imports.
11.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n whether increased imports have caused serious injury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not arbitrarily modify a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
12. Upon decision to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give a public notice through the official journal of that Party. The public notice shall identify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such measure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duration of such measure, and the findings and reasoned conclusions reached on all pertinent issues of law and fact.
13. In the public notic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of a Party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Article 56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 (a) the term “domestic industry” means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s operating in the Area of a Party, or those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goods;
- (b) the term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and
- (c) the term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is clearly imminent, based on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Japan-Malaysia EPA

Article 22

Non-tariff Measur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each Country shall not introduce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Countr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other Country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 23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부 록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unt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latter Country, the latter Country may, a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et out in this paragraph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Each Country shall not apply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on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up to the limit of quota quantities granted under tariff rate quot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in Annex 1.

3. (a) A Country may tak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ame procedures as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s may be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b)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in all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4.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 A Countr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Country upon:

(i)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of this Article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and

(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b) The Country making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provide the other Countr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the reas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an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peri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i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its subheading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ts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 (c) A Countr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of this Article, exchanging views o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 (d)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tim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four years. Howeve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be maintained for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five years. In order to facilitate adjust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Country maintaining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gressively liberalis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 (e)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r one year, whichever is longer.
 - (f) Upon the termin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5. (a) A Countr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to the other Countr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b) If the Countr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4(c) of this Article, the Countr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 The right of suspens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18 months that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Countr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only whil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maintained.

6.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a Countr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to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a)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r

(b)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7. Each Countr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8. Each Countr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9. (a)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Country may take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hich shall take the form of the measure set out in subparagraph 1(a) or (b) of this Articl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 (b) The Countr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Countr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ultations between the Countr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 (c)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d) of this Article.
- (d) Paragraph 2, subparagraph 4(f) and paragraphs 7 and 8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customs duty imposed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of this Article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10.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a) and subparagraph 9(b) of this Article and any other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ntries shall be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11. The Countr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necessary, after 10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Japan-Indonesia EPA

Article 23

Non-tariff Measures

Each Party shall not introduce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other Party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 24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Party may, a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of that Part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부 록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is being imported into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2. Each Party shall not apply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up to the limit of quota quantities granted under tariff rate quot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in Annex 1.
3. (a) A Party may take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b)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in all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4.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a)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 (i)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and the reasons for it; and
 - (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b) The Party making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 (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the reas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peri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 (i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proposed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ts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 (c)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exchanging views on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5.
- (d)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tim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four years. Howeve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may be extended, provided that the total period of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ncluding such extensions, shall not exceed five years. In order to facilitate adjust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Party maintaining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gressively liberalize the

부 록

-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 (e) No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bilateral safeguard measure or one year, whichever is longer.
 - (f) Upon the termin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5. (a)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 (b)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4(c),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only while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maintained.
6.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to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 (a)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r

(b)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7.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8.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the bilateral safeguard measure.
9. (a)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which shall take the form of the measure set out in subparagraph 1(a) or (b)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b) A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c)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paragraph 3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d).
(d) Subparagraph 4(f) and paragraphs 7 and 8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The customs duty imposed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bilateral safeguard measure

부 록

shall be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10.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a) and 9(b) and any oth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11.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necessary,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Japan-Philippine EPA

Article 21

Non-tariff Measures

Each Party shall not introduce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other Party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Article 22

Emergency Measur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Party may, as an emergency measur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of that Part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when the emergency measure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a customs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is being imported into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 2. Each Party shall not apply emergency measures on an originating good imported up to the limit of quota quantities granted under tariff rate quot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in Annex 1.
- 3. (a) A Party may take an emergency measure only after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each Party's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 and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b)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shall in all

부 록

cases be completed within one (1) year following its date of initiation.

4. (a)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take a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which shall take the form of the measure set out in subparagraph 1(a) or (b) above, pursuant to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are threatening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 (b) The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prior to applying a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shall be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is taken.
 - (c)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shall not exceed two hundred (200)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ertinent requirements of paragraph 3 above shall be met. The duration of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shall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e) below.
 - (d) Paragraph 2 and subparagraph 5(g)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The customs duty imposed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shall be refunded i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above does not determine that increased imports of the originating good have caused or threatened to cause serious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5.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n emergency measure:

- (a) A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upon:
 - (i)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above relating to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and the reasons for it; and
 - (ii) taking a decision to apply or extend an emergency measure.
- (b) The Party making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 (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above, the reas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period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and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 (ii)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i) above,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the increased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good subject to the proposed emergency measure and its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a precise description of the emergency measure, the proposed date of its introduct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 (c) When the Party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pertinent information that include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other Party may only disclose non-confidential part, summary or version thereof to the public.
- (d)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n emergency measure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for prio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 above, exchanging views on the emergency measure and reaching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set out in paragraph 6 below.

- (e) No emergency measure shall be maintained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period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provided that such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3) years. Howeve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emergency measure may be maintained for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four (4) years. In order to facilitate adjust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n emergency measure is over one (1) year, the Party maintaining the emergency measure shall progressively liberalize the emergency measure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 (f) No emergency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 to the import of a particular originating good which has been subject to such an emergency measure, for a period of time equal to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emergency measure or one (1) year, whichever is longer.
- (g) Upon the termination of an emergency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which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emergency measure.

6. (a) A Party proposing to apply or extend an emergency measur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customs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emergency measure.

- (b)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5(d) above,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emergency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emergency measur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only while the emergency measure is maintained.

(c) The right of suspens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above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twelve (12) months that an emergency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emergency measure has been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such an emergency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7.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b) and 5(a) above and any other communication, including in the form of documents,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made in English.

8. Each Party shall ensure the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9. Each Party shall ensure equitable,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procedures relating to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10.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1(b) and 4(a) above, if a decision to apply an emergency measure or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o apply a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is taken by the last day of the seventh year, each Party may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originating good up to the level of the rate of customs duty which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o th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effect on the day when the emergency measure or the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is taken, provided that such an

부 록

emergency measure or such a provisional emergency measure shall satisfy the condition set out in subparagraph 1(b) above at the latest as from the first day of the eighth year.

Not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year” means, with respect to the first year,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til the coming March 31 and, with respect to each subsequent year, the period of twelve (12) months which starts on April 1 of that year.

11. Each Party may take safeguard measures to the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 (a)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provided that the originating good is the subject of the concession of that Party under the GATT 1994 and, by such a safeguard measure, that Party suspends the obligation of that Party under the GATT 1994 or withdraws or modifies the concession of that Party under the GATT 1994; or
 - (b)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Chapter a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provided that the originating good is the subject of the concession of that Party under the GATT 1994 and, by such a safeguard measure, that Party imposes the additional duty under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12.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necessary, after ten (10)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WTO 농업협정 제5조

제 5 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1.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 제4조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

가.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물량이 특정년도에 제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접근 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나.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Re.2)인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Remark 2) 이 호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 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및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부 록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양허의 일부로서 설정된 현행 및 최소시장접근 약속하의 수입은 제1항가호와 제4항의 규정 원용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 산정에는 포함되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수입은 제1항가호 및 제4항 또는 제1항나호 및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가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운송중에 있는 당해 품목의 공급물량은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동 물량은 다음해에 제1항가호의 규정을 발동할 목적으로 동 품목의 다음해의 수입량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1항가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동 추가관세가 부과된 당해년도의 말까지만 유지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지는 해에 유효한 일반 관세의 1/3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발동수준은 시장접근기회에 기초한 아래 표에 따라 설정하되 동 시장접근기회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이전 3년동안의 당해품목의 국내 소비(Re.3)에 대한 수입비율로서 정의된다.

(Remark 3) 국내소비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가호에 따라 기준발동수준이 적용된다.

- 가.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25%가 된다.
- 나.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보다 크고 3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10%가 된다.

다.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보다 큰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05%가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정년도의 추가적인 관세는 당해년도에 양허를 행한 회원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당해품목의 절대 수입량이 상기에 설정된 기준발동수준에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량을 곱한것(x)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량의 전년도대비 절대변화량(y)을 더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단, 발동수준은 상기(x)에 있어서 평균수입량의 105%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5. 제1항나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가.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과 제1항나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라 한다)가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가 된다.

다.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에 나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라.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에 나호와 다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부 록

마.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큰 경우,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6.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이러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특히, 제1항가호와 제4항에서의 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 기간중의 상응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기간에 대한 상이한 참조가격은 제1항나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7.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은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제1항가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한 사전에, 그리고 늦어도 이러한 조치이행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비량의 변화량이 제4항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 개별관세품목 분류번호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량을 할당하는데 사용된 정보나 방법이 관련자료에 포함된다. 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의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게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위의 제1항나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 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느 기간에도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당해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위의 제1항나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 대하여 동 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

8. 위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제1항(a)와 제3항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개혁 과정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4.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 (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과 제67조의 규정은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잠정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물

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65조제4항·제7항 및 제6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

제 4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①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

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율에 한한다)과 기준세율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긴급관세조치는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칠레정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

①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은 120일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잠정긴급관세조치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의한 관세액과 같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 (농산물에 대한 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칠레정부가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이하 “칠레정부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칠레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칠레정부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에 따라 칠레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조치는 칠레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그 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2조의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 ①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이 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